



2022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경기도 옴부즈만

2022 ○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경기도 옴부즈만



Contents

01 개관

제1절 추진배경	08
제2절 주요연혁	09
제3절 옴부즈만 현황	10

02 구성 및 운영

제1절 구성 및 기능	14
제2절 운영	17

03 운영성과

제1절 고충민원 처리 실적	26
제2절 홍보 및 활동	36

04 주요 처리사례

제1절 제도개선권고	46
제2절 시정권고	66
제3절 의견표명	111
제4절 심의안내	163

05 부록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2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2

발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도정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경기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도민이 도정 전반에 대해 고쳐야 할 점이나 불편한 점, 잘못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가 생활밀착형 정책을 소통과 협치를 통해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

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국민의 대리인’을 가리킵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통제하고, 도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조정·중재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분들,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실천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편의,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등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Ombuds
Man

2022년은 경기도 옴부즈만 제4기가 맞은 두 번째 해였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조사활동과 깊이 있는 심의·논의를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사·심의 민원 21건, 사무국 처리 민원 75건, 진행 중 민원 14건 등 총 110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옴부즈만에서 제도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한 민원 총 18건 중 행정이 수용한 민원은 14건이었고, 불수용한 민원은 3건,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은 1건입니다.

저희가 작은 성과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특별히 옴부즈만 제도의 내실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은순 감사관님과 옴부즈만 운영을 옆에서 꼼꼼하게 지원해주신 최홍규 조사담당관님, 소민정 옴부즈만운영지원팀장님 등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마음과 정성,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에도 경기도 옴부즈만은 성실하고 진취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제기된 고충민원의 해결을 넘어서, 비슷한 고충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이 도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1월

경기도 대표 옴부즈만 임주환 올림

Ombuds
Man

01

개관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옴부즈만 현황

01 추진배경

복지국가 지향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른 행정권 강화와 행정재량의 복잡·다양화 현상은 전 세계적 추세로, 이에 따른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입법·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새로운 행정문제와 다양한 고충민원들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처음 창설된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제도를 뜻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며,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조정·중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며, 법규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는 행정기관에게 시정권고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며, 행정개혁을 촉진하여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고대 스웨덴어 *ombudsman**에서 유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 배상금을 손해를 입힌 자로부터 받아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

현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

주요 연혁 02

경기도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행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1월 17일 경기도 옴부즈만의 첫 위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03 옴부즈만 현황

(2023.1.1.기준)



임주환 | 대표 옴부즈만

- 현) 희망제작소 소장
- 전) 한겨레신문 기자
- 임기 : 2021.05.10. ~ 2023.05.09.



지영림 | 부 옴부즈만

- 현)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 임기 : 2021.05.10. ~ 2023.05.09.



명광복 | 사무국장

- 현) 도서출판 시금치 편집위원
- 전) 서울시감사위원회
- 공익제보지원 팀장
- 임기 : 2023.01.01. ~ 2024.12.31.



김소영

- 현) 신영세무회계 대표회계사
- 현)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국장
- 임기 : 2023.01.01. ~ 2024.12.31.



김안태

- 전) 권익위 심사기획과장
- 전)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 센터장
- 임기 : 2021.05.10. ~ 2023.05.09.



김정인

- 현) 수원대학교 부교수(법·행정학부)
-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
- 임기 : 2021.05.10. ~ 2023.05.09.



김희란

- 현)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 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임기 : 2021.05.10. ~ 2023.05.09.



박치현

- 현) 변호사 박치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상근변호사
- 임기 : 2023.01.01. ~ 2024.12.31.



황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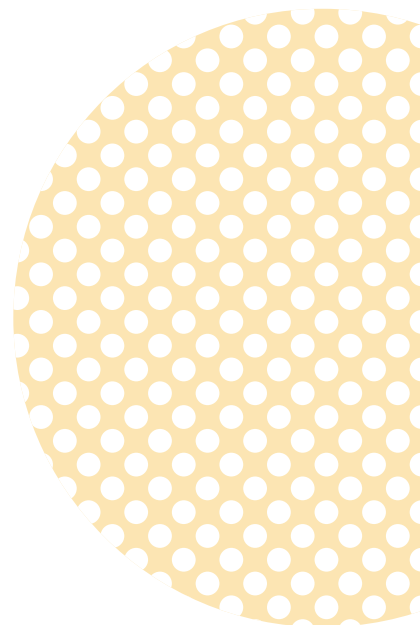
- 현) 대한감정기술원 대표
- 전) 수원도시공사 비상임이사
- 임기 : 2021.05.10. ~ 2023.05.09.



황지연

- 전) 경기도 옴부즈만 (1기 대표)
- 전)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
- 임기 : 2021.05.10. ~ 2023.05.09.

Ombuds
Man



Ombuds
Man

02

구성 및 운영

제1절 구성 및 기능

제2절 운영

01 구성 및 기능

옴부즈만의 구성

경기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옴부즈만은 도지사 소속 하의 행정부형 옴부즈만이며, 복수의 옴부즈만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위원은 임기 2년의 비상임 위촉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이며, 위원은 고충민원 업무 담당 국장·변호사·교수·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옴부즈만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자격요건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옴부즈만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옴부즈만의 기능

옴부즈만은 도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 다수인민원·공공갈등민원·복합민원 등의 고충민원 등을 조사·처리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행정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며 고충민원을 조정·중재한다. 그 외에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옴부즈만 운영 및 직권조사에 대하여 보고하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각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주장을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통제하고,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보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게 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한 번 결정되면 그 결정을 선례로 삼아 이를 지속하려는 행정의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되도록 자극하며,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의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도모한다.

사무국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019년 3월 13일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고충민원 접수부터 안건의 상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의 관할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2023.1.1. 신규 위촉된 옴부즈만 중 1인이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며 사무국 업무는 조사담당관실 옴부즈만운영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인력은 총 4명이다. 사무국은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그 밖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민원의 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공권력적 행위, 공권력 행사의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뿐 아니라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위법·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해당한다.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법에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 및 행정기관의 시책 등도 이에 포함된다.

고충민원은 사안이 개별적이고 다양하며 예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비 서류나 절차·처분요건 등을 규정하기 어렵고, 내용·절차가 복잡하여 전문성 및 여러 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요구되며,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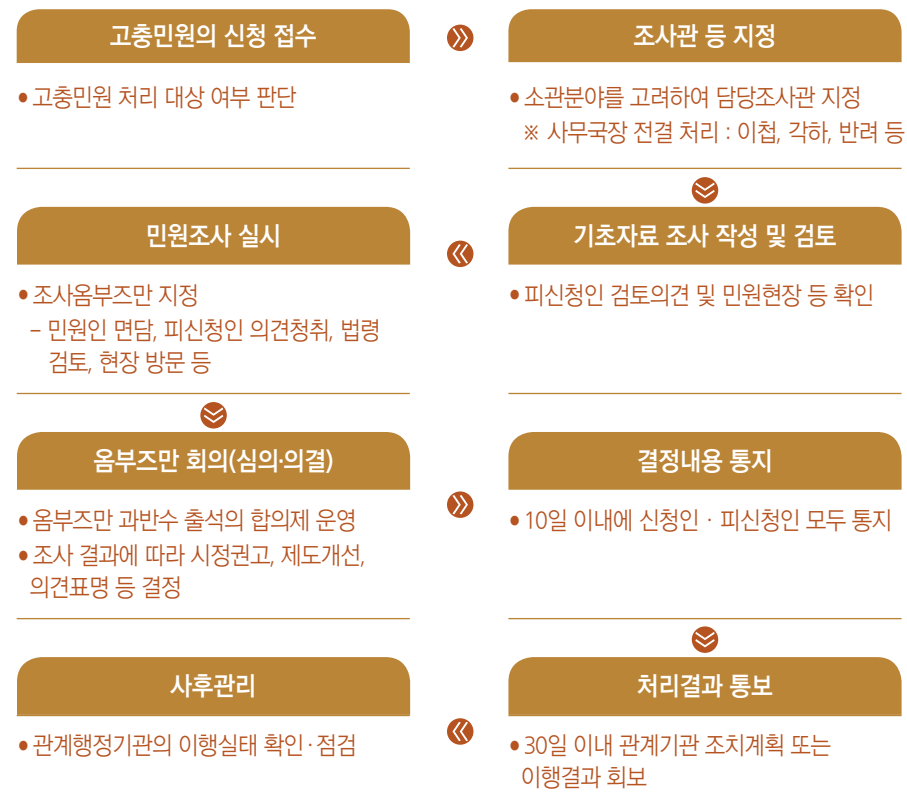
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개인·법인·단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등을 기재하여 옴부즈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만운영지원팀(16508)
- 인터넷 신청 : www.gg.go.kr/ombudsman
- 전자메일 : ombudsman@gg.go.kr
- 팩스 : 031-8008-2789

고충민원 처리



처리방침의 결정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옴부즈만에서 조사·심의할 사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이 옴부즈만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부서)로 이송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각하대상 민원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민원의 이첩과 종결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때 옴부즈만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하는 행정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고충민원 역시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 처리 기간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신청서 보완·문서 이송·대표자 선정·의견 청취·감정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민원조사

옴부즈만의 조사는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사·심의를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민원발생·처리 경위, 처리의견·계획, 기타 현황자료 등에 관하여 자료 등을 제출받고, 피신청인·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통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범위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할 수 있다.

합의와 조정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권유)할 수 있다. 합의 권고 또는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합의에 참여한 사무국장이나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옴부즈만이 확인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된다.

옴부즈만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옴부즈만 회의

옴부즈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례회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옴부즈만을 지정하여 민원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조사한 민원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

옴부즈만 회의에서는 조사·심의하기로 한 민원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옴부즈만은 안건 민원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 심의안내 등의 내용으로 결정한다.

결정내용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건의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지

옴부즈만은 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내용이 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의견에 참가한 옴부즈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의견서의 형태로 통지하며, 결정 내용이 권고·의견표명 외의 경우에는 안내 회신문의 형태로 통지한다.

옴부즈만으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피신청인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재심의

피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건을 재심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심의를 요청받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대표옴부즈만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사후관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옴부즈만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옴부즈만은 피신청인의 시정조치 및 권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감사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Ombuds
Man

03

운영성과

제1절 고충민원 처리 실적

제2절 홍보 및 활동

01 고충민원 처리 실적(접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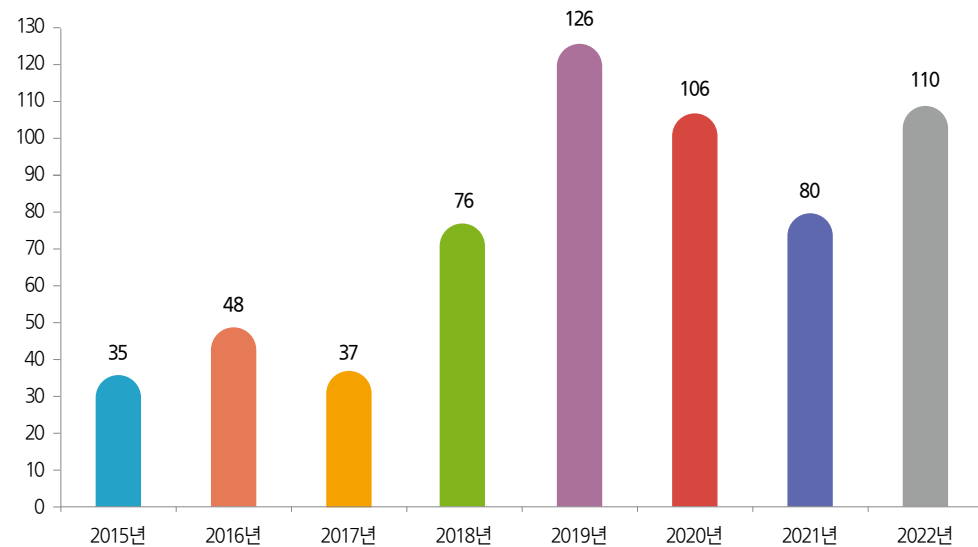
총괄

경기도 옴부즈만은 2015년 1월 27일 출범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618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하였다.

옴부즈만은 출범 첫 해인 2015년 35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48건, 2017년 37건, 2018년 76건, 2019년의 126건, 2020년 106건, 2021년 80건, 2022년 11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2015년~2022년 옴부즈만 연도별 처리 결과 현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18	35	48	37	76	126	106	80	110



총 618건 중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은 149건으로 제도개선권고 31건, 시정권고 20건, 의견표명 41건, 조정 2건, 심의안내 55건이었다. 사무국 처리 민원은 455건으로 해결 34건, 취하 16건, 각하 127건, 이송 278건이었으며, 2022. 12. 31. 기준 14건이 진행중에 있다.

[2015년~2022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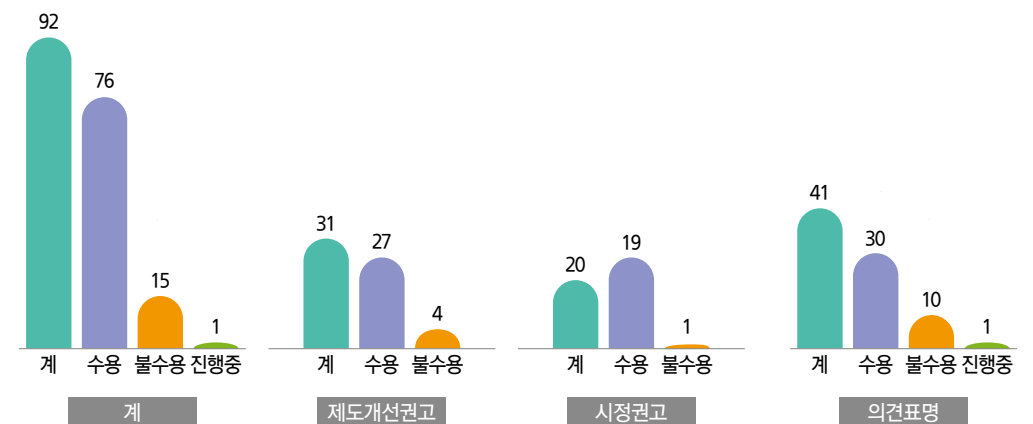
계	옴부즈만 심의(149건)					사무국 종결(455건)				진행중
	제도개선 권고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심의 안내	해결	취하	각하	이송	
618	31	20	41	2	55	34	16	127	278	14

옴부즈만에서 제도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한 민원은 총 92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76건이다.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3.5%로, 제도개선권고 민원은 31건 중 27건이 수용되어 87.1%의 수용률을, 시정권고 민원은 20건 중 19건이 수용되어 95%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41건 중 30건이 수용되어 75%의 수용률을 기록하였다.

[2015년~2022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92	31	20	41
수용	76	27	19	30
불수용	15	4	1	10
진행중	1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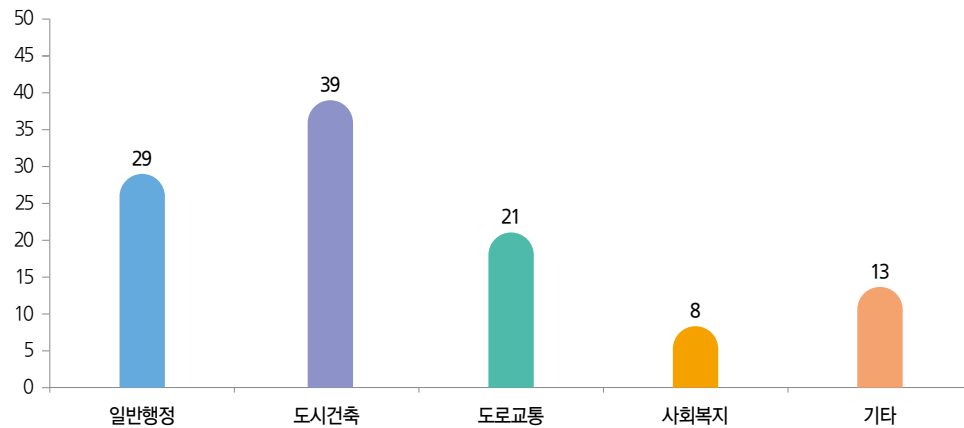
2022년

경기도 옴부즈만은 2022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 21건과 사무국 처리 민원 75건, 진행중 14건을 합하여 총 110건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였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축 분야 민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일반행정 분야 29건, 도로교통 분야 21건, 기타 분야 13건, 사회복지 분야 8건 순이었다.

[2022년 옴부즈만 분야별 처리 결과 현황]

계	일반행정	도시건축	도로교통	사회복지	기타
110	29	39	21	8	13



옴부즈만 조사·심의 민원은 21건으로 제도개선권고 2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6건, 심의 안내 3건이었으며, 사무국 처리 민원은 75건으로 해결 6건, 취하 7건, 각하 22건, 이송 40건이었다.

[2022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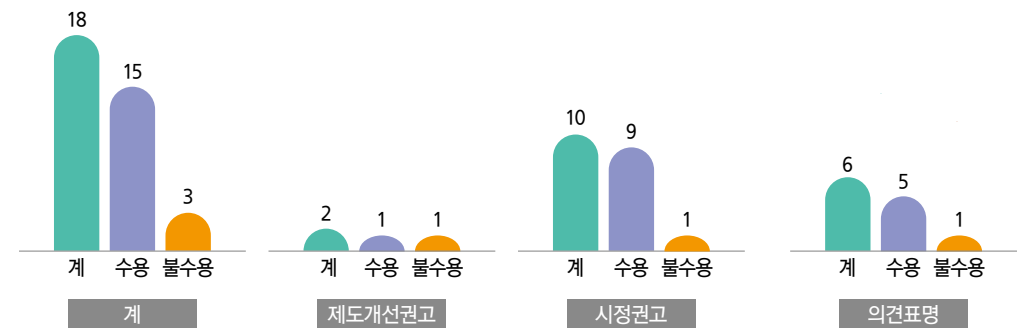
계	옴부즈만 심의(21건)					사무국 처리(75건)				진행중
	제도개선 권고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심의 안내	해결	취하	각하	이송	
110	2	10	6	-	3	6	7	22	40	14

2022년 옴부즈만에서 제도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한 민원 총 18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14건이었으며, 불수용한 민원은 3건, 현재 진행중인 민원은 1건이었다.

피신청인이 옴부즈만의 권고 및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된 주요 사례로는 '아파트 부출입구 연결 도로 개통 요청', '〇〇간이정류장 무정차에 대한 정차 재개 요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권고',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 사유지 보상 요청' 등이 있다.

[2022년 옴부즈만 처리 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18	2	10	6
수용	15	1	9	5
불수용	3	1	1	1



[2022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명	기관	처리결과	비고
1	산업안전관리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완료	심의안내
2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취소 철회 요청	경기도	완료	시정권고
3	용인국제물류4.0단지 사업관련 민원 조사 요청	용인시, 경기도	이송	용인시, 경기도 소관
4	평택시 ○○○회관 운영문제 및 시의 소극행정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5	환기설비용 에어체인지의 신기술인증 및 신제품인증 요청	-	완료	각하
6	경기도의료원 ○○병원 의사의 부당해고 민원	수원시	완료	각하
7	고양시의 개발, 건설 비리와 ○○○○○ 전수조사 요청	고양시	완료	각하
8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행정지도에 대한 취소 및 공무원 조사 요청	부천시	이송	부천시 소관
9	화성시 ○○○○○○의 민원대응 적절성 조사	화성시	이송	화성시 소관
10	불법개도살장 관련 담당부서팀장의 직권남용 관련 조사 요청	구리시	완료	취하
11	경기도 ○○○본부 감찰팀의 권력 횡포 및 남용 조사 요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완료	각하
12	이동노동자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지원	경기도	완료	제도개선 권고
13	평택시 ○○○동 5필지 용적률 관련 부당 행정처리 정정 요구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14	경기도의료원 ○○병원 의사 부당해고 및 채용과정 조사 요청	경기도 의료원	완료	각하
15	아파트 부출입구 연결도로 개통 요청	광주시,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완료	시정권고
16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급 거부	경기도	완료	의견표명
17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운영 관련 점검 및 처벌 요청	양주시	완료	각하

연번	민원명	소관기관	처리결과	비고
18	허위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및 피해자 오류정보 정정 요청	안양시	이송	안양시 소관
19	역세권 재개발로 인한 무형자산 평가 절하 민원	안양시	완료	각하
20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탈락 구제 관련	경기도	완료	심의안내
21	평택시 ○○공사 정규직 채용 관련 타당성 검토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22	인근 건축물의 성토로 인한 주택피해 민원	고양시	완료	취하
23	용인행정타운 ○○○○○단지 공동주택 특별감사요청	경기도	이송	경기도 소관
24	잔여지(○○동 ○○-○○) 도로 개설요구	과천시	이송	과천시 소관
25	경기도 문화예술 공공단체의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의심행위 제보	-	완료	해결
26 ~ 30	신설 초등학교 교명 재심의 반대	경기도교육청	완료	각하
3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관련 민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완료	해결
32	파주시청 ○○과 민원처리 애로사항 개선	파주시	이송	파주시 소관
33	영업장 앞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평택시	이송	평택시 소관
34	공유재산 공장폐기물 적치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해지 요청	광주시	완료	시정권고
35	주택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광주시	이송	광주시 소관
36	○○간이정류장 무정차에 대한 정차 재개 요청	경기도	완료	시정권고
37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행정청의 위법한 합의 강요	군포시	이송	군포시 소관
38	심야시간 학원차량 불법주정차 해결요청	수원시	이송	수원시 소관
39	아파트 앞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시흥시	이송	시흥시 소관
40	주식투자정보제공 손실배상 청구 및 약정해지 수수료 환급 요청	경기도	이송	경기도 소관

[2022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 원 명	소관기관	처리결과	비 고
41	경기도 기관추천 장애인특별공급 배점항목 시정 요청	경기도	완료	심의안내
42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 및 생업시설 이축에 대한 시청의 소극적 행정처분	의왕시	완료	각하
43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민원	경기도	이송	경기도 소관
44	용인국제물류구역승인고시중 국지도○○호선 세목고시 부분 취소 요청	경기도	완료	의견표명
45	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인정 여부 질의	경기도	이송	경기도 소관
46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미충족 선거인지 여부의 판단	경기도	이송	경기도 소관
47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경기도교육청	완료	각하
48	건축물 건축 시 도로개설 의무 부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적용 판단	남양주시	완료	취하
49	경기광주시 ○○○센터장의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광주시	이송	광주시 소관
50	공동주택 관련 수원시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	수원시	이송	수원시 소관
51	골프장의 부당한 골프회원권 예약 및 사용금지 갑질 횡포	가평군	완료	각하
52	화성시 도로보수 요청	화성시	이송	화성시 소관
53 ~ 57	○○간이정류장 무정차에 대한 정차 재개 요청	경기도	완료	시정권고
58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후 행정처리 개선 요청	고양시	이송	고양시 소관
59	토지분할로 인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고양시	완료	각하
60	토지소유자에 대한 무허가 건물 정보공개 거부 취소 요청	이천시	이송	이천시 소관
61	하수구 배수관 확장요청	성남시	완료	각하
62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 사유지 보상 요청	안산시	완료	시정권고
63	건설현장의 불법공사에 대한 피해	광명시	이송	광명시 소관

연번	민 원 명	소관기관	처리결과	비 고
64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광명시	이송	광명시 소관
65	도시정비법 제78조의 타당성검증처리 부당성	경기도	이송	경기도 소관
6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권고	경기도	완료	제도개선 권고
67	수상레저시설 내 무단 흡연 방치 수질오염 방관	가평군	완료	해결
68	사유지 인접 전주 이설 요청	한국전력공사	완료	각하
69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악취 해결 요청	김포시	이송	김포시 소관
70	아파트 신축공사의 품질검사 재요청 및 경기도 담당직원 변경 요청	경기도	완료	취하
71	주택법위반 관련한 담당직원의 과도한 조사로 인한 사생활 피해	경기도	완료	각하
72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시설의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 요청	고양시	완료	각하
73	인근 건축 공사현장 소음 및 진동 행정지도 요청	안양시	이송	안양시 소관
74	임대주택 소득기준 관련 질의	경기주택 도시공사	완료	해결
75	주민의 통행을 위한 마을도로 폭 확장 요청	광주시	진행중	-
76	건축주 명의 오류로 인한 건축주 명의변경 요청	여주시	이송	여주시 소관
77	국지도 도로부지내 통신사 증폭기 전주이전	광주시	완료	취하
78	가평○○지구 전세피해 해결 촉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완료	각하
79	경기융합타운 공사 소음	경기도, 경기주택 도시공사	완료	의견표명
80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가 누락된 건축 준공허가 조사 요청	하남시	이송	하남시 소관
81	국유지 개인 불법점유 묵인에 대한 가평군 조사 요청	가평군	완료	의견표명

[2022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 원 명	소관기관	처리결과	비 고
82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정정 요청	김포시	이송	김포시 소관
83	인도 공사 중 안전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사고 보상 요청	양평군	이송	양평군 소관
84	식품 이물 혼입에 대한 조치 요청	양평군	완료	의견표명
85	공사현장 인근 주택붕괴 위험에 따른 민원	광주시	이송	광주시 소관
86	도로가 불법 주차차 단속 요청	용인시	이송	용인시 소관
87	경기광주시 ○○○센터장의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광주시	완료	취하
88	축사로 인한 악취 등 피해 조치 요청	양평군, 경기도	완료	의견표명
89	수해로 인한 도로유실 관련 건물 붕괴로 인 한 피해 민원	여주시	진행중	-
90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이전설치 요청	광명시	완료	해결
91	희망키움통장 만기해지 불가 해결 요청	양주시	완료	해결
92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 사유지 미보상에 대한 민원	안산시	완료	취하
93 ~ 95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요청	경기도	진행중	-
96	사유지 인접 국유지의 지목 변경, 확장 및 포장 요청	오산시	진행중	-
97	맨홀 사고로 인한 부상 피해배상 요청	연천군	이송	연천군 소관
98	경사면 인접지 개발행위시 옹벽의 설치 요청	양평군	진행중	-
99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부당성	경기도	진행중	-
100	주거지 인근 보강토 안전진단 요청	김포시	이송	김포시 소관
100	주거지 인근 보강토 안전진단 요청	김포시	이송	김포시 소관
101	도로 가로수 뿌리로 인한 상습적 피해 해결 요청	수원시	진행중	-

연번	민 원 명	소관기관	처리결과	비 고
102	사유지에 지어진 경로당 철거 요청	화성시	진행중	-
103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부작위 신고	성남시	이송	성남시 소관
104	행정복지센터 소극행정 조사	고양시	진행중	-
105	도시개발사업 존치지역 지장물 제거에 대한 보상 요청	평택시, 경기도	이송	평택시, 경기도 소관
106	임대주택 관리업체 비리 신고	경기 주택도시공사	진행중	-
107	천안행 시외버스의 고양○○버스터미널 재경유 요청	고양시	진행중	-
108	동료교사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	경기도 교육청	완료	각하
109	우회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 대책 요청	광주시	진행중	-
110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부당한 서류 요구	안성시	이송	안성시 소관

02 홍보 및 활동

옴부즈만은 주요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충민원 접수경로를 다양화하였으며 경기도 옴부즈만 홍보영상을 새로이 제작하여 아파트 미디어보드 및 유튜브, G-Bus TV 등을 통해 송출하고 경기도 공식 블로그 및 SNS에도 글과 영상 등의 홍보콘텐츠를 게시하였고 도 및 시·군 민원실에 홍보물 배포,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옴부즈만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경기도 옴부즈만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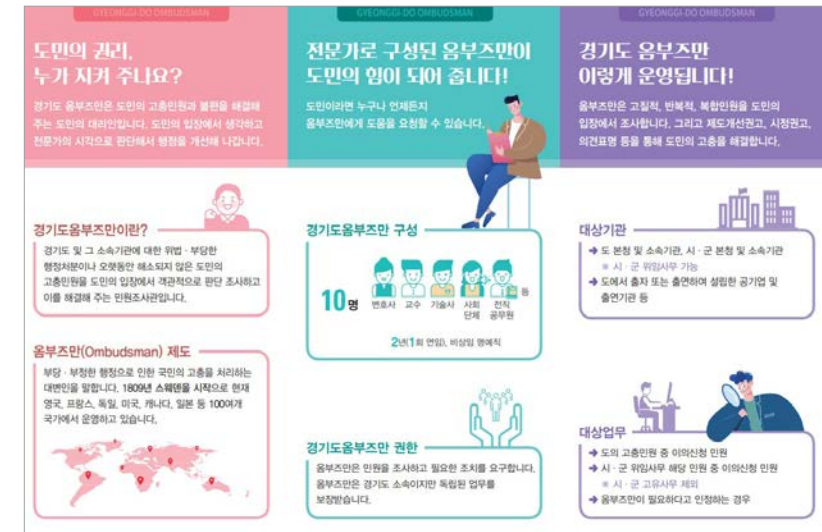
유튜브



G-Bus TV



리플릿



아파트 미디어보드



경기도 옴부즈만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4기 옴부즈만 활동모습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



〈현장조사〉



옴부즈만 위촉식(2023.1.16.)



Ombuds
Man

04

주요 처리사례

제1절 제도개선권고

제2절 시정권고

제3절 의견표명

제4절 심의안내

01 제도개선권고

이동노동자를 위한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지원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제안 배경

가. 2021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동·방문직군 종사자의 57% 이상이 근무 중 원할 때 화장실 사용이 대체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인근에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것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다수의 이동노동자가 업무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64.5%), 자존감 저하(26.5%), 우울감(20.8%)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이용 제약으로 인해 방광염, 신우신염 등 비뇨기계 질환을 직업병처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렇듯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버스·택시운전자 등 직업 특성상 이동하면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노동자의 경우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겪으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중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의 지정확대 및 지원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종류 및 현황

가. 종류와 개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종 류

구 분	정 의
공중화장실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이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설치장소 : 공공기관, 공원, 관광지, 역, 터미널, 주유소, 체육시설, 상가 등

나. 현 황

1) 공중화장실

○ 지원사업

- 사업명 :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 2025년(5년간)
- 사업비 : 총 15억원(도 30%, 시·군 70%)
 - ※ 연평균 약 3억원(도 9천만원, 시·군 2.1억원)
- 대상 : 공중화장실 500개소
- 내용 : 시·군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비상벨의 운영비 지원

○ 도 내 공중화장실 현황(2021년)

(단위 : 개소)

계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10,989	682	840	657	496	786	542	480	614	662	340	290	313	442	305	226	202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306	148	173	231	244	100	238	150	198	334	256	159	257	192	126	-

2) 개방화장실

○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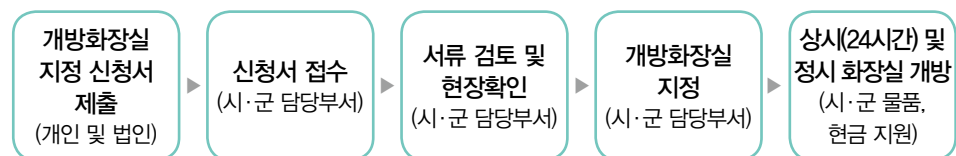
- 내 용 : 개방화장실 물품 및 현금 지원
※ 연평균 1개소당 약 14만원
- 근 거 : 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방화장실 지원 근거 포함, 31개 시·군)
- 지원방법 : 화장실 관련 물품(26개 시·군), 현금(5개 시·군)

○ 도 내 개방화장실 현황(2021년)

(단위 : 개소)

계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1,556	89	29	18	61	110	31	67	69	7	42	36	21	51	116	37	26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35	19	56	182	34	32	1	8	26	30	204	22	69	26	2	-

3) 개방화장실 지정절차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점

가. 도 권한의 한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개방화장실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시·군 조례에 따른 고유사무로 시·군에서 직접 지정 및 관리 운영하고, 도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등 관리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비체계적 관리조직 및 인력부족 등

공중화장실 관련 사무는 중앙은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시·군에서는 환경 관련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도 담당자의 경우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화장실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 야간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 부족

공중·개방화장실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과 특정 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곳으로 나뉘며, 대다수 공중·개방화장실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간 근무가 필요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버스·택시운전자 등의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라. 지원사업 관련 예산 미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10억원 내외(시·군·구별 1~2억원)로 한정되어 있고, 도에서도 공중·개방화장실 확대운영이 아닌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의 시설을 활용하여 확대가 가능한 개방화장실의 경우 국·도비 지원없이 ‘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1개소당 연평균 약 14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군 자체예산에 의존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개방화장실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

가.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남)는 개방화장실 지원 관련 조례를 두어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도 개방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확대 및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이동노동자의 주 활동 공간이 주택가라는 점과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점을 고려하여 인근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공공·민간)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공동주택 관리실, 야간영업시설 등에 지정하여 이용이 힘든 야간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확충이 필요하며 건물주나 관리인들에게 화장실 관리 운영비, 세금감면 등을 지원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그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접근성과 개방성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가로변 공중화장실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24시간 개방하므로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개방화장실 설치 시 가시성과 심미성까지 고려한다면 대중들의 화장실에 대한 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다.

라.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어플 운영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어플을 만들어 위치, 개방시간, 주차가능 여부, 안심벨 설치화장실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실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플인증을 통한 화장실 출입방식을 적용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예산 확충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업무는 이동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상 업무 중요도에 매우 낮게 고려되어 관련 인력,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실 업무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점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시·군 자체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지원방안들을 재검토하여 시·군 재정 차이에 따른 화장실 관리, 운영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해 도비 지원예산을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결론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되 이동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규정하고, 전담인력 및 예산확충 등 공중·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불수용)

- 개방화장실의 지정 관련 필요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불부합함.
- 31개 시·군에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권고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제안 배경

가. 과거 주택의 대량공급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도입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특정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장기공공임대 비중 10%를 정책목표로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 OECD 평균이상 재고율 10% (2020년 국토교통부)

나.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이하 '혼합주택단지'라 한다)¹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형태로 주택공급 정책이 변화되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결과²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거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혼합주택단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간의 갈등, 제도의 혼선 및 단지 관리의 비효율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혼합주택단지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분양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이원

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차장 등 기반·부대·복지시설 등 공유)

² 이종권 등(2019),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계획모델 개선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화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법령 개정 전 단기적 대안마련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한다) 개정으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해소 방안과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제기되었던 경기도 준칙 관련 민원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현황

가. 혼합주택단지 관련 법제도

(SH도시공사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입주인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 발췌)

구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도준칙참고)	임대주택관리규약(별도준칙없음)
주민 대표 회의	명칭	입주자대표회의
	성격	의결 및 감독기구
	강제성	있음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제안,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

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2021 주택금융리서치 소셜믹스 공간적 통합에서 사회적연대로 중 발췌)

근거법	구분	임대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소형주택 의무비율	신규주택 공급시 85㎡이하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

다. 경기도 공동주택현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기준,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포함 / 2021. 12. 31. 기준 내부자료)

구분	경기도 공동주택 현황							
	합계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소계	분양	혼합	소계	분양	임대	혼합
단지	6,963 (100%)	4,190 (60.18%)	4,134 (59.37%)	56 (0.81%)	2,773 (39.82%)	2,250 (32.31%)	517 (7.42%)	6 (0.09%)
동	45,045 (100%)	35,005 (77.71%)	34,347 (76.25%)	658 (1.46%)	10,040 (22.29%)	5,717 (12.69%)	4,288 (9.52%)	35 (0.08%)
세대	3,238,439 (100%)	2,653,119 (81.93%)	2,601,898 (80.35%)	51,221 (1.58%)	585,320 (18.07%)	172,952 (5.34%)	409,452 (12.64%)	2,916 (0.09%)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건축물(건축허가 포함)

라.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1)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2) 적용범위 :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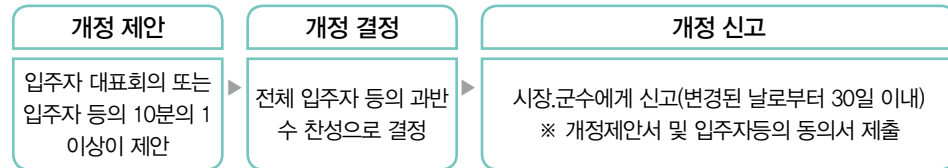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 없음

3)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제 정]



[개 정]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 3. (생략)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5. ~ 8. (생략)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 21. (생략)

② (생략)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21. 8. 10.>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

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 ④ (생략)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 ~ 4. (생략)

③ (생략)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수선충당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2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 ⑤ (생략)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8. 14.>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0. 12. 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④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7. 16., 2018. 12. 31., 2019. 2. 12.>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절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 ⑪ (생략)

나. 문제점

1) 경기도 준칙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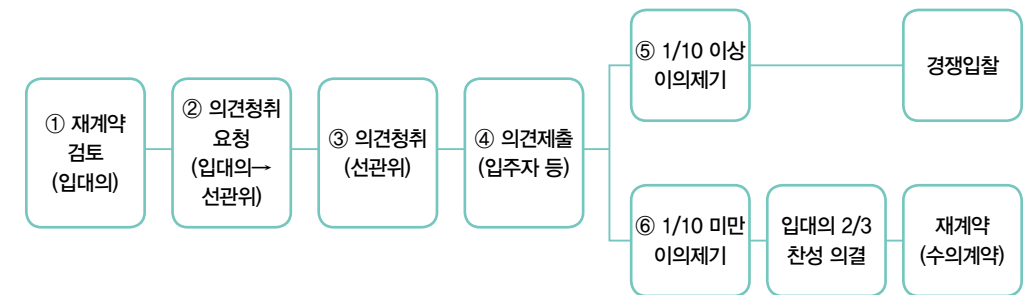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업무 평가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에 평가 항목 등)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가) 경기도 준칙 제48조제1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준칙 제4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상호, 만료일, 별지 제10호 서식 평가항목 등은 이미 계약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없음에도 경기도 준칙은 평가내용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평가결과 의결,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조회,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의 요건이 충족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준칙 제48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구조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서로 정할 수 있다.

가) 혼합주택단지는 임대주택단지만 공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슬럼화, 낙인효과 등을 완화시키고 임대 세대와 분양세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등 공동주택공급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아울러, 2020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은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호 공급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혼합주택단지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자민원 분석에서도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혼합단지 관련 전자민원 추이(서울주택도시공사 2018~2020)]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갈등실태 및 제도개선연구 중 발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계	19	100	22	100	56	100
아파트 시설 관리 문제	3	16	6	27	11	20
의사결정의 공정성	7	37	8	36	23	41
의사결정의 신속성	5	26	3	14	7	13
임차인대표회의 지원	2	11	3	14	10	18
기타	2	11	2	9	5	9

나) 혼합주택단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공동결정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합의되지 않은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1) 경기도 준칙 제48조

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준거하여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검토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준칙 제48조제1항은 서식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재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무 평가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임에도 마치 평가내용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무 평가와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과 관련한 준칙에 대한 오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준칙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절차와 방법, 의결정족수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구조

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이원화된 관리규정으로 인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방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수의 연구보고와 현장관계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 소통창구 부재, 임차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 등을 혼합주택단지의 주요 갈등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공존하고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불필요한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동결정사항의 범위, 방법, 절차를 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임차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대표회의의 설치, 혼합단지 관리규약 제정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기도 준칙 제86조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준칙 또한 임차인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경기도 준칙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는 바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등 이해관계자간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준칙에 반영할 수 있다는 피신청기관의 의견 또한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단기적 대안으로 혼합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분양·임차 세대 간의 수시 협의를 통한 주민갈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경기도 준칙에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아울러, 장기적으로 현행 이원화된 관리 규정이 정비되어 입주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 혼합주택단지의 이해관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혼합주택단지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요인, 분쟁사례 분석 등 경기도 차원의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1. 피신청인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로 활용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동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검토를 위한 의결항목과 입주자들의 의견조회 절차, 의결정족수의 구체화(준칙 제48조)
 - 나.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예방과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의사결정 방안 마련(준칙 제86조)
2. 공동주택공급 유형으로 정착·확대되고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운영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효율적인 혼합주택단지 운영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조사·연구 시행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수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은 입주자 등임.
- 다만, 입주자들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 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청취 요청을 하기 전에 주택관리업자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재계약 관련 사항을 의결하여 통보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현행 준칙 제48조제1항의 조문과 같은항제3호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평가항목 등”의 조문으로 인해 이미 관리규약에 정한 평가항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석되므로 향후 준칙 개정 시 아래 검토(안)과 같이 상정하고자 함.

* 검토(안)

현행	검토(안)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들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입주자들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업무 평가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에 평가항목 등)	3. 입주자대표회의가 별지 제10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평가한 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02 시정권고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취소 철회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신청원인

가. 피신청인 경기도는 ○○표준협회(이하 '표준협회'라 한다)에 위탁³하여 2021년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인증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신청인 ○○공업(주)은 인증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인증을 취득하면 총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1. 4. 26. 경기도-표준협회-○○공업(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인증 획득을 위한 과정으로 제품심사 신청서를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2021. 11. 30.까지 신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인증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제품심사 시험기관과 표준협회의 협조 부족으로 인증이 지연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 신청인은 ○○시에 소재한 펌프 제조 업체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증지원사업은 참여 기업이 현장심사(표준협회), 제품심사(시험기관), 인증심사(표준협회)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인증을 취득하면 소요 비용의 80%를

³ 경기도는 매년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품질경영 관련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2020년, 2021년은 ○○표준협회가 선정됨.

지원받는 사업이다.

- 2) 신청인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신청인과 「2021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인증 획득지원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기한 내(2021.11.30.) 인증을 받지 못하여 지원금 대상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다.
- 3) 신청인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품심사 시험기관(시험연구원)의 업무처리 지연(사유:상정위원회 일정 조율, 최종결재권자 출장에 따른 부재 등) 및 표준협회의 소극적 협조로 인증취득 업무가 지연되어 기한(2021.11.30.) 내 인증을 받지 못하여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금 취소 결정(표준협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취소 재발 방지 및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1)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개요

- ① 대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품질 관련 신규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
- ② 사업기간: 2021년 4월 ~ 11월
- ③ 수탁기관: ○○표준협회(경기지역본부)
- ④ 지원규모: 중소기업 16개 사 내외
- ⑤ 인증분야: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
- ⑥ 지원내용: 인증획득을 위한 직접성 경비(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총 소요 비용의 80% 지원
- ⑦ 지원조건: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인증취득이 가능한 기업

- 2) 표준협회는 시험성적서 발급 지연에 따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출 기한을 1회 연장(기존 11.30. → 연장 12.8.)해주었음에도 인증취득이 지연되자 협약서 제8조제4항에 따라 차 순위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지원하였고, 인증업무 지연의 직접적인 책임이 표준협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다만 참여 기업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①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② 사업수행기관 부서(사업, 인증) 간 협업 강화 ③ 제품별 인증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전 안내 조치 및 기업의 사업 기간 준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추가지원 가능 여부) 공고,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인증을 취득한 차 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여 사업비 소진하였으며, 사업 기간 내 인증취득이 어려워 사업을 자진 포기한 기업과의 형평성 고려할 때 추가지원은 불가하다.

※ 동 사업에 참여한 (주)○○○ 등 2개 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증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함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협약서, 검토의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표준협회에 위탁한 인증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 11. 30.까지 KS 인증서를 제출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받는 내용으로 2021. 4. 26. 피신청인 및 표준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별 KS인증센터를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제품 소형 벌루트 펌프(표준번호KSBO○○○)의 인증기관은 ○○표준협회와 ○○○전기전자시험연구원(○○C)이며, 신청인은 이 중 ○○표준협회에 KS인증을 신청하였다.

다. 표준협회는 시험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하여 2021. 10. 29. 접수되었으나 처리기간인 30일 이내에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자, 당초 2021. 11. 30.까지인 신청인의 인증서 제출 기한을 같은 해 12. 8.까지 구두로 연장해 주었다.

라. 시험연구원은 2021. 12. 3.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고, 신청인은 담당자로부터 인증심의기관인 ○○표준협회에 같은 달 6일 오전까지 보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서류가 오후에 전달되어 같은 달 8일 개최된 ○○표준협회 KS 인증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같은 달 22일 상정된다는 통보를 2021. 12. 9.자로 받았다.

마. 표준협회는 신청인이 연장기한인 2021. 12. 8.까지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품질

인증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차순위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했다.

판 단

가. 관계법령

1) 산업표준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 마.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관리·보증·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

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⑤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경기도의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질경영 활성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품질경영 교육 및 지도, 선진기업 벤치마킹, 개선성과의 특성화 등의 품질경영 사업
2. KS, ISO, HACCP, GR 등의 인증획득 및 각종 인증사업
3. 고객 불만 감소 활동, 불량률 감소활동,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활동 등 품질개선 활동 교육 및 지도사업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품질관련 자격 획득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③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품질경영 통계작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
2. 일반기업 등의 품질경영 설계, 생산 판매 등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품질경영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과 개인에 대한 지원
3.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전람회의 개최 지원
4.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우수 사례연구
5. 품질경영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6. 품질경영 전문회사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 사업
7. 품질경영 국제교류사업
8. 그 밖에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 1) 이 사건 인증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협약서, KS인증절차 등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인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인증취득이 가능한 기업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고, 위 기한은 인증신청자가 KS인증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서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검토, 보완, 사업장심사, 제품시험, 시험성적서 검토, 인증위원

심의, 인증계약 체결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표준협회의 경우 인증위원회가 2주마다 한 번만 개최된다는 점에서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업기간 만료일을 불과 1개월 앞둔 시점(21.10.29.)에 제품심사를 접수하였고, 이에 더하여 제품심사기관인 시험연구원의 내부사정으로 시험성적서 발급이 처리기간인 30일을 넘겨 지연발급(21.12.6.) 됨으로써 표준협회 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또한 늦어져 정해진 기한 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신청인은 수탁기관인 표준협회와 KS인증 수행기관이 동일한 기관임에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여 결국 신청인이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두 개의 KS인증기관 중 수탁기관인 ○○표준협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제품시험과 인증심사가 자동 연계되는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업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신청인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협약서 상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신청인 외 제3자에게 일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표준협회가 인증서 제출 기한을 같은 해 12. 8.까지 연장해주었으나 준수하지 못한 점, 인증위원회 안건 상정이 같은 달 22일에서야 이루어져 연장된 기한까지도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점, 표준협회가 협약서에 따라 신청인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인증을 취득한 차순위 기업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지원예산을 소진한 점, 인증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목표 달성이 어려워 중도에 스스로 포기한 기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나 협약서 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만 특별히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표준협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3) 다만, 이 사건 인증지원사업의 취지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피신청인과 표준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표준협회는 사업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신청인의 인증지원신청 절차가 여전

히 진행 중이고, 시험연구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1. 12. 6. 발급된 제품시험성적서가 같은 달 8일 개최되는 인증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온 상태에서 '절차' 만 남아있음에도 신청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4)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취소를 철회하고 신청인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향후 인증지원사업 추진 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선정된 모든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수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품질인증획득 사업비 지원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일부수용)

(지원취소 처분 철회)

- 2021년도 사업공고,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인증을 취득한 차 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소진 및 사업종료 됨.
- 사업기한 내에 인증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자진 포기한 기업, 사업 기한을 준수하여 인증을 취득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로 어려움.

(재발방지 개선책 마련)

- '2022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 반영(2022.1.7.)하여 품질인증획득지원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강화함.
- 참여기업의 인증 지연 사유가 외부요인 등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기한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사업 협약서에 반영하였음.

아파트 부출입구 연결도로 개통 요청

피신청인

광주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신청원인

민원 대상지는 광주시 ○○지구 주민들의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지하차도로 지난해 공사완료 되었으나, 교차로 지하구조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로 개통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이 지하차도를 개통하여 인근 주민들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단계 구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경기도 광주시 ○○로○○번길 ○○ ○단지)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인근에 조성된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었다. 또한, 해당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에서 경기○○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는 완공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준공이 미루어져 우회도로 이용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2) 이에, 신청인은 광주시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지하차도의 개통을 요청하였으나 안전상 미비점 보완 후 개통할 것으로 답변 후,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주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지하차도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광주시장)

- 1) 현재 ○○지구(○○역 1~5단지) 주민들은 ○○로(○○로○○번길)을 따라 시도○○호선을 이용하여 국도○○·○○호선, 시도○○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접속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요청한 지하차도 개통 시 ○○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역 및 시도○○호선 진·출입이 현재보다 수월해져 지하차도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그러나 ○○역세권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지하차도를 개통할 경우 現교통체계로는 지하차도와 접한 2단지 주민들의 지하차도 진·출입 및 교차로 내 U턴으로 인한 차량 정체 및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해당 민원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회전교차로·U턴차로 확보(3단지 교차로 앞) 등 지하차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통행체계 변경 방안을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였으나 시설기준 및 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험 등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대안 검토결과]

-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변경 : 부적합
 - 회전교차로 설계속도 기준 부합(30km/h이하) 하나, 회전부 설계속도기준(10km/h 이하)을 위한 내접원지름(15m이상) 미충족 및 4개의 접근로 중 4단지 부출입구를 제외한 3개의 접근로가 안전 시거리 확보를 위한 종단 경사도 기준 3% 초과
- 3단지 입구 교차로 U턴차로 확보 : 부적합
 - U턴방면 9m이상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하나, 3단지 입구 교차로의 해당 구간의 경우 6m 도로폭으로 진행차량의 원활한 U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4) ○○지구 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확보되어 있는 지하차도 앞 U턴 차로를 삭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U턴차로 삭제 시 2단지 주민들의 원활한 지하차도 진출입을 위하여 203동과 관리사무소 사이 부출입구 개설, ○○로(○○암로○○번길)를 통한 지하차도 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현재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한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중으로 부출입구 개설 완료 후 지하차도 개통을 위해 U턴 삭제 등 노면 및 신호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다. 피신청인(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

- 1) 민원대상지는 ○○역세권 2단계 사업구간으로 현재 도로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민원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2단계 사업완료(2022.12월) 전 조기 개통하고자 시설물 인수기관(광주시)과 협의중에 있으나 교차로 기하구조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이에, 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원대상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을 협의중에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역 부근의 ○동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1')로 주변에는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2')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인접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1의 부출입구와 이 사건 아파트2의 주출입구 사이에는 광주시 ○○○○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로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1')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도시계획도로(○로 2-○○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2')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아파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역 1~5단지)들은 광주시 ○○○○과가 관리하는 이 사건의 도로1을 지나 ○○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이 사건의 도로2를 이용하면 ○○역과 ○○대로(시도○○호선) 등 주변도로의 이용이 현재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이에, 신청인은 시설물 조성이 완료된 이 사건의 도로구간들이 장기간 미개통 상태로 있어 ○○역 등 주변도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의 도로’가 2년 전에 완공되었으나 미개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시설은 2021년 3월 중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12월 2단계 사업구간 완료 후 광주시(○○○○과)로 시설물을 인수인계 후 개통할 계획에 있다.

라. 다만, 대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설물 인수기관인 광주시(○○○○과)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의 도로1과 2를 사업완료 전 조기 개통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나 아래 같은 문제로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 시설물 인수기관 광주시(○○○○과)에서는 아파트 시공 당시 민간사업자가 개설한 이 사건의 도로1 개통 시 현재의 교통체계에서 지하차도와 접한 이 사건의 아파트2 주민들의 지하차도 진·출입 및 교차로 내 U턴으로 인한 차량정체 및 추돌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바, 안전성 확보 후 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 주민들의 안전한 지하차도 이용을 위하여 U턴 차로를 삭제하고 이로 인하여 U턴을 통한 지하차도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이 사건의 아파트2 주민들의 지하차도 진출입 편의를 위한 신규 출입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수기관인 광주시(○○○○과)는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주관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해소 후 도로시설물 인수 및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203동과 관리사무소 사이 부출입구 개설 및 신호가 있는 도로 설치를 통한 지하차도 통행 편의성 확보 등

사. 반면에 대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사업구역에 해당되는 이 사건의 도로2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광주시 ○○○○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 사건의 도로1과

관련된 문제점과 추가적인 사항은 사실상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 단

가. 관련법령

1)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 ⑤ (생략)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 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내용

1) 이 사건 아파트 1(4단지)를 포함한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지하도로 개통에 따른 인접도로 접근 편의성을 비교해볼 때 미개통의 경우보다 접근거리가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1 부출입구와 연결되는 지하차도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지하차도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이 사건의 아파트2(2단지)에 별도의 부출입구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앞 U턴 삭제가 전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지하차도 진입을 위한 U턴 삭제를 전제로 지하차도 조기개통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3)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 사건의 아파트1(4단지)과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지하차도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의 아파트2(2단지) 주민들이 동시에 지하차도 이용에 따른 이용편의성을 얻을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우회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용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불편하게 지내야한다는 접근은 합

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아파트2(2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바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르게 보상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게 타당해 보인다.

결론

피신청인은 주민불편 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아파트 2(2단지) 부출입구로 개설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즉시 이 사건의 아파트2(2단지)의 부출입구로 개설에 착수하고, 그와 동시에 지하차도의 선개통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조치결과 (수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교통영향분석) 포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선이행 필요함.
- 지하차도 개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U턴 차로 삭제, 교통신호체계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정, 2단지의 부출입구 개설 관련 행정절차 완료 및 착수와 동시에 지하차도 개통을 위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지구 준공을 위한 협의 추진 예정임.
- 2022.4.28. 기준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광주시 ○○과로 단지 내 도로변 경에 관한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광주시 관련 부서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 위와 관련된 행정 처리가 완료된 이후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광주시 ○○○과와 협의하여 도로개설공사 시행 요청 시 공동사업자 간 협의 이후 적극 협조할 예정임.
- 2단지 부출입구 개설요청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 협의 진행과 동시에 광주시 ○○○과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단계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협의(개통)를 추진하여 관련 민원을 조속 해결토록 노력하겠음.
- 2022. 12. 31. 현재 주민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소형 회전교차로 설계중으로 2023년 상반기중 개통 예정임.

공유재산 공장폐기물 적치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해지 요청

피신청인

광주시장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시 ○○동 소재 공유재산 ○○○-1, ○○○-1번지(이하 사건 공유지) 인근 거주자로 지역주민들이 텃밭 및 공용주차 공간으로 사용 중인 사건 공유지를 대상으로 행한 피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용목적과 사용허가 방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 피신청인이 2019년 사건 공유지에 대하여 (주)○○○○○(이하 수허가자)가 공유재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적치장 및 철재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절하게 사용을 허가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지적 경계에 헨스 설치 등 위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 그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경쟁입찰의 방법(단서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허가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비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기업에게 사용허가한 광주시의 부적절한 사용허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 1) 사건 도유지 현장 확인 결과, 헨스 설치·폐자재 야적 등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목적(대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수익허가기간(2021.5.6.~2023.12.31.)이 만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허가 취소는 어려움이 있다.
- 2) 아울러, 본 민원의 이유로 제시한 사건 도유지 인접지역 주민들 또한 오래전부터 사건 도유지 허가 외 지역을 무단경작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 3) 따라서, 본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향후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건 도유지를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광주시 ○○○○관리관(○○과)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 이 사건 도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된 ○○관리관(○○과)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계획을 통보하여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도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해소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도유지 ○○관리관은 무단점유 사실통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다. 사건 도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사실을 통보받은 수허가자는 광주시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용허가 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표명하였다.

이에 이 사건 도유지 ○○관리관은 2021.5.28.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하고, 사용허가 신청 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라. 현장확인 결과 수허가자는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도유지(사용허가 구역 내)를 활용하여 철재 등 물품적치와 사용허가지를 구분하기 위한 철재 헨스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사용허가지를 제외한 일부 도유지가 인근 주민들의 소규모 경작과 주차부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 단

가. 관련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 ④ (생략)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

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자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

- 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② ~ ④ (생략)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 6. 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생략)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10.1.)

③ (생략)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명령·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2., 2022.1.3., 2022.1.6., 2022.4.2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 정책과	1	○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및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6조
	2	• 도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처분의 승인 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20조

6)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밝혀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5. 허가조건

나. 판단내용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해소를 목적으로 수허가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허가자와 수익계약 방법으로 이 사건 도유지 사용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계약의 범위가 아니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다만,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사용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규모 공유재산의 경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하여 무단점유자에게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공유재산 질의회신 및 감사사례집(2020.12.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감사사례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허가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종료 후 갱신허가 시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점, 사용허가 구역 외 사건 도유지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경작 및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이에, 수의계약 방식의 사용허가 등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익과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수허가자의 재산권 손해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현 시점에서의 사용허가 취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주민들과 사건 도유지 수허가자 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사건 도유지 내 적치되어 있는 철재 등이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사건 도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입찰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사건 도유지 사용수익허가 해지 요청을 기각한다.

조치결과 (수용)

- 기존 사용허가는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되, 허가기간(2021.5.6. ~ 2023.12.31.) 만료 후 연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입찰 또는 예외적인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으로 사용허가 처리 예정임.

○○간이정류장 무정차에 대한 정차 재개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신청원인

서울과 충북혁신도시를 오가는 사건 시외버스노선의 운행경로중 중간경유지에 해당하는 ○○간이정류소 미정차를 변경인가하여 사건 시외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용주민의 교통편의성 확보를 위해 운경경로 복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고속도로 ○○시 구간 상·하행선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정류소*(이하 '사건 정류소'라 한다)에는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왕복 운행중인 직행 시외버스노선(이하 '사건 노선'이라 한다)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신청인 ○○○ 외 5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사건 노선을 이용하여 ○○○○○로 출·퇴근하고 있었으나, 운송사는 사건 노선의 이용객 감소와 운행시간 지연 등을 이유로 경기도로 운행경로 변경 인가를 신청, 인가받아 지난 2022. 6. 1.부터 사건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있다.

* 경기도 ○○시 ○○구 ○○동(상행), ○○○동(하행)에 위치한 ○○고속도로 버스정류소

이에, 신청인들은 ○○과 ○○○○○를 오가는 사건 노선 중간경유지에 해당하는 사건 정류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 증가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사건 노선에 대한 운행경로 복원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민원요청에 따라 해당 운송사로 사건 정류소에 대한 경로변경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운송사로부터 안전 및 운행시간 증가 등을 이유로 정차운행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사건 정류소는 노선버스가 정차하기 힘든 환경으로 운송사가 제기하는 안전상의 문제점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고속도로상 노선버스 정차는 고속형 노선처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정류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시외버스의 정차를 위해서는 사건 정류소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사건 노선 운송사)

사건 정류소는 노선버스의 승·하차를 위한 정차보다는 산악회, 통근, 통학을 위한 전세(관광)버스가 주로 정차하고 있는 임시 정류소로 승·하차를 위한 정차구역은 있으나, 대기하는 차량이 많은 상습정체구역으로 정해진 승·하차 구역에 정차하기 어려워 불안정한 구역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혼잡한 상황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여 승객사고 위험이 큰 정류소이다.

또한,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결과 사건 정류소에 대한 문제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용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행경로 변경을 신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건 정류소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차 재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운송사는 경기도 ○○시 ○○터미널에 주사무소를 두고 남○○ ↔ ○○ 간 시외버스 노선을 주로 운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22. 5. 11. 경기도(○○○○과)로 ○○○○버스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사건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건 노선 운행경로(변경전)]

○ (다3-) ○○○터미널-○○정류소-○○리-○○-○○리-○○시외버스터미널
-○○공대-○○○리-○○-○○○○터미널
○ (다3-3-124) ○○○터미널-○○정류소-○○시외버스터미널-○○○○○○터미널

나. 사건 노선은 운송사가 경기도로부터 2015. 11. 인가를 받아 ○○↔(경기남부 경유)↔○○○○○○를 운행중인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으로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건 정류소 정차는 사건 노선 인가 초기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 전(2015. 12.~2022. 5.)까지 경기남부 거주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차 운영되고 있었다.

운송사는 사건 정류소를 사용하는 이용객 규모(극소수)와 정차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로 인한 탑승객 불만 및 승무원 피로감 해소를 위해 사건 정류소 미정차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 2022. 5. 20. 운행경로 변경을 인가받아 2022. 6. 1.부터 변경된 운행경로로 사건 노선을 운행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정류소 여건은 다음과 같다.

- 1) 사건 정류소는 ○○고속도로(○○시 ○○구) 상에 위치한 간이 버스 정류소로 ○○고속버스터미널 ↔ ○○○○단지를 운행하는 고속형 시외버스, ○○○○터미널 ↔ ○○○○터미널을 운행하는 직행형 시외버스와 다수의 통근,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한 정류소로 사건 정류소 부근에서 기존 차선 외에 한 차선이 추가되는 구조이다.
- 2) 통근·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자의 승·하차 정류소로 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5. 12.부터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 확대를 위한 노선버스 승·하차 정류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중 출근시간대(오전 6:30~8:30) 하루 평균 200여대의 버스와 1,300여 명이 이용하는 매우 혼잡한 정류소로 2014년 이용객 혼잡 최소화를 위해 대합실 확대 등 시설개선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확장공간 부족 등으로 사건 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추가 도로확장 등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3) 노선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버스정류소와 달리 정차시간이 다소 긴 통학·통근·관광버스가 주로 정차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동시 다발적인 이

용으로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객들이 빠른 승·하차를 위해 정해진 승강장이 아닌 도로위에서 정차한 버스에 승·하차 하는 등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4) 이에 따라, 운송사는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안전사고 위험방지와 사건 노선의 이용객 규모(극소수), 교통정체로 인한 승무원 운행시간 증가, 목적지 도착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경기도로 운행경로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받은 사실이 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신청기관 경기도(○○○○과)는 운송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여부를 검토·인가하였다.

이때,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정해진 관계 시·도지사(○○, ○○) 이외에 유관기관(○○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의견회신을 요청하여 원안동의, 의견없음을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3. 21.>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23., 2014. 7. 29.>

1. ~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 ⑥ (생략)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 (생략)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9. 1. 30.>

1. 법 제10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3.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7조(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의 인·면허)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연장·변경 및 운행횟수 증회 등의 면허·인가·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2. (생략)

3. 운행계통의 변경

가. 운행계통의 통합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나. 운행계통의 분할 및 단축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나”목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면허는 변경하고자 하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별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인·면허 한다.

4. ~ 6. (생략)

나. 판단 내용

- 1) 이 고충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는 피신청기관의 사건 노선 변경 인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인가된 사항으로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다. 또한, 통학·통근·관광버스가 주로 정착하고 있는 사건 정류소의 특성 상 신청인들이 사건 노선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인한 혼잡상황이 예견되는 바, 사건 노선의 정착을 재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용객과 승무원의 안전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운송사가 우려하는 문제점 역시 타당하다.

- 2) 다만, 오랜시간 신청인들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건 노선을 별도의 대안 마련

도 없이 무정차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없이 정차하고 있는 다른 노선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노선에 대한 운행경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 3) 이에, 사건 노선에 대한 운송사와 신청인들의 주장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여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사건 노선의 ○○간이정류소 정차가 재개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신청인에게 이용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간이정류소 경유 시외버스 정차가 재개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수용)

- 여객관련 노선 운행업체인 ○○여객(주)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신청을 접수하여, 하루 2회 출·퇴근 시간대에 ○○간이정류장에 추가 정차하기 위한 노선버스 경로변경 신청을 신고·수리하여 2022. 10. 28. 정차 개시하였음.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 사유지 보상 요청

피신청인

안산시장

신청원인

하수관리 정비공사를 위한 하수관로 매설시 사용동의를 요청한 사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등을 사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명확한 행정절차 없이 사용동의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공공하수도관리청(피신청인)에 대한 행정처리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 내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한 「○○○ 하수관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업구역 내 위치한 안산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번지 토지(전 ○○○㎡) 소유자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청 안산시의 감독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감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로 매설 후 원상복구 및 재포장 되는 공사내용과 사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비 예산이 미반영되었음을 안내받고,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행 동의를 위한 '관로시공 허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미확보 등을 사유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명확한 행정절차 없이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피신청인의 행정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사유지 사용에 대한 토지 보상을 원한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공사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하수도법 제10조의2가 신설(2021.1.5.)되기 전인 2018년부터 설계 용역을 진행·시행된 사업으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사유지가 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현재 상수도, 전력 등이 매설되어있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된 공사 및 추후 진행할 공사 구간 모두 사유지가 포함되어 특정 구간만 사유지 사용 보상을 하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사업비 증대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익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다.

다. 관계기관(경기도지사)

공공하수도 설치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하수도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보상할 수 있으며, 2022.1.6. 개정·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장·군수는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장·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폐지 인가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 하수관로 신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2012년 10월 안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신청(2017.3.), 실시 설계용역(2018.5.~2019.3.), 기술자문(2019.5. ~2019.6.), 재원협의(2020.7.~2021.1.)를 거쳐 2021년 6월 착공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계획(2021.2.9. 안산시 00과-0000)에 포함된 위치도 및 신청인의 토지 사용 동의를 위한 감리단의 안내(문자메시지 등)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구역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너비 약 4m의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한 지리정보(GIS)에 따르면 해당 구역 지하에는 이미 상수관로 등이 매설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판 단

가. 관련 법령

1) 하수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 7.>

⑤ ~ ⑥ (생략)

⑦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⑧ (생략)

부칙 <제17852호, 2021. 1. 5.>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4.]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1. 4.>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text{보상금} = \text{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times (\text{입체이용저해율} + \text{추가보정률}) \times \text{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1. ~ 6.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생략)

③ ~ ④ (생략)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생략)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

③ ~ ④ (생략)

[별표 2]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2., 2022.1.3., 2022.1.6., 2022.4.2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상하수과	1	○ 공공하수도에 관한 다음 사무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펌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변경·폐지 인가 및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나. 판단 내용

1) 그간 공공하수도 설치에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식되어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손실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수도 시설이 도로 등 공공용지를 따라 건설되어 사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었으며, 하수도 시설의 지하매설이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하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에 관한 보상 논의가 널리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지하공간 사용과 관련한 법령·지침 등이 미비하여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2) 그러나, 최근 하수도 시설의 유형 다양화와 하수도 시설 설치가 침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인식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사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시한 하수도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신설(2021.1.5. 시행)과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22.1.6. 시행) 되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설치 시 사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화 된 보상기준과 방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안산시 고시 제○○○○-○○호(20○○.○.○○.)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승계(2005.6.18.)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지하에는 이미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기 전부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해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피신청인은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의 명세를 포함한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을 갖춘 고시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고시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폐지 인가 및 고시에 관한 사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임기관(시장·군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1. 피신청인에게 「안산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구역 내 위치한 안산시 ○○구 ○○동 ○○○-○번지 토지(전 492㎡)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관계기관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폐지 인가 및 고시에 관한 사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임기관(시·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수용)

(사용부분 보상)

- 신청인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나,
- 보상할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아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 소요 시 단기간 내 준공이 어렵고, 형평성 문제로 다른 사유지의 보상을 고려할 경우 무기한 지연 또는 사업 취소 등이 우려되며 중대한 공익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 해당 사유지를 우회하면서 기존 가구에 하수관 연결이 가능하도록 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함.

(적절한 관리·감독 시행)

- 경기도 옴부즈만 심의결과 배포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이행하도록 협조 공문 시달 완료함.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절차 이행협조(2022.11.23. 000과-00000)

03 의견표명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급 거부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도의 2021년 제2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공고에 따라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신청서류 검토결과 면접 응시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증빙자료 및 면접회사 응시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 신청인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절차와 방법에 따라 면접에 응시한 2건에 대하여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면접 응시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사실 관계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2) 그러나,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해당 보완자료만으로 실제 면접응시 여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면접회사로 응시 여부 확인동의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미지급된 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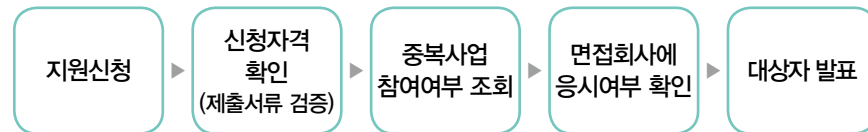
- 1) 신청인은 지난 2021.8.6. 공고된 2021년 제2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공고에 따라 청년면접수당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청년면접수당 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공고문 등에 제시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 제출자료의 보완과 검증을 요청하였다.
- 2) 청년면접수당 지급을 위한 검증방법 및 절차 또한 공고문을 포함한 관련 홈페이지 등에 “면접회사 응시여부 확인”을 고지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면접회사로 실제 응시여부를 확인 후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과도한 요구라며 면접회사로 실제 응시여부 확인을 미동의하였다.
- 3) 청년면접수당 지급을 위한 판단기준은 실제 면접 응시여부 확인 및 검증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면접 응시여부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바, 실제 면접 응시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또는 기타 방법(면접회사 응시여부 확인 등)을 통한 검증을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의 미동의로 인해 미선정되었다.
- 4)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증과정은 청년면접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검증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신청 건에 대한 미선정 처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취업면접에 참여한 만18세~만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소득제한·취업여부 무관, 지방소재 기업·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 지원내용 : 연 최대 30만원(1회 5만원, 최대 6회 / 지역화폐로 지급)
- 모집시기 : 연 3회(4월, 8월, 12월)

- 필수서류 : 온라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 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면접회사 발급 면접확인서를 원칙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제출

○ 지원절차



- 수행기관 : 경기도 일자리재단(공기관위탁)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1.8.24.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시 온라인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면접회사가 발급한 면접확인서를 대체하기 위한 면접확인 대체서약서 및 면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은 접수확인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사전검토 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유효기간 경과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실제 면접응시 여부 확인이 어려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보완요청 자료의 일부(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였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신청인에게 면접응시 증빙자료의 재보완 요청과 함께 면접응시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건은 미선정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일자리재단에서 기타 방법(면접회사 응시여부 유선확인 등)으로 면접 응시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이유로 경기도 담당부서(청년복지정책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부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수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나, 추가 제출자료 또한 수신일 등이 미기재되어 있어 실제 면접응시 여부를 확인하기에 불충분하였다.

라.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실제 면접응시 여부 검증을 위한 면접회사 응시 여부 확인에 대하여 재차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면접회사 검증 미동의와 추가 보완자료 미제출로 인해 해당 신청 건은 증빙자료 불충분을 사유로 미선정 처리되었다.

판 단

가. 관련법령

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2.〉〈개정 2020.11.12.〉

1.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11.12.〉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

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2.1.6.]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개정 2020.11.12., 2022.1.6.>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신설 2019.1.14.]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신설 2022.1.6.]

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6.]

⑥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방안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6.]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
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 <신설 2018.1.4.>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실·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4.>

나. 판단내용

-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신청인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실제 면접 참여여부” 검증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제출서류만으로 면접 응시여부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나, 면접회사의 구인계획과 신청인의 합격에 대한 인과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실제 면접 응시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특히, 최초 신청서 제출된 면접확인 대체서약서의 응시일과 증빙자료의 면접일 상이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실제 면접응시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보완 자료요청과 면접 응시여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확인된다.

- 2) 또한, 피신청인은 공고문을 포함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청년면접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제출서류와 검증방법 및 절차로 “면접회사 응시여부 확인”을 고지하고 있는 바, 절차

에 따른 면접회사 응시여부 확인동의와 추가 자료청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필수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③ 채용공고문(2021.4.23. 이전 면접의 경우 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 ④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면접증빙 서류 조건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 참석증빙 1종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 사진(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등]

- *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 *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 * 녹취록 제출 시 면접통보 시 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

[심사·검증방법]



- 3)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으로 피신청기관의 부정수급 방지와 공정성 확립 등을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며 타당한 절차로 인정된다.

다만, 청년면접수당의 정책목적과 신청인의 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아울러, 경기도 거주여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보유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면접회사로부터 확인된 면접확인서 제출이 원칙임에도 예외 적용하고 있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면접회사로 실제 면접응시 여부 검증이 필수절차로 인지될 수 있도록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등의 서식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신청인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부정수급 방지와 공정성 확립 등을 위한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이행 노력은 바람직하며 타당한 절차로 인정되나,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정책수당의 정책목적과 신청인의 적극적 구직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구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지급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지급의견을 표명한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민원불편 예방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제출서류 간소화와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제출 건에 대한 면접응시여부 검증에 대한 사전동의를 위한 서식개정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불수용)

-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 수행기관의 검증과정이 타당한 절차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민원 제기 및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미지급된 면접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미지급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제출서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얻어 수행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신청인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3년 동안 운영 중인 접수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시간과 예산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기관과 함께 검토하겠음.
- 향후에는 신청인이 실제 면접 응시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수 절차로 확실히 인지될 수 있도록 면접수당 온라인 신청서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서식을 추가할 예정임

용인국제물류구역승인고시중 국지도00호선 세목고시 부분 취소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5. 12. 31.로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된 국지도 57호선 편입 토지가 2021.7.21. 경기도 고시 제2021-5128호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으로 포함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고시의 국지도 57호선 세목고시를 부분 취소하고 국지도 57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 등 새로운 사업인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21. 7. 21. 경기도 고시 제0000-0000호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구역 외 기반시설 중 일부인 국지도 57호선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주택(용인시 ○○구 ○○동 ○○○-○번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자녀로 2015. 12. 31.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 실효된 국지도 00호선의 편입 토지가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고시의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으로 포함 고시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해당 세목 고시를 취소하고 국지도 00호선 편입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의 새로운 사업인정 절차를 이행한 후 새로운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1) 국지도 00호선 지정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지도 00호선은 1996. 7. 19. 대통령령 제00000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으로 최초 지정된 도로구역으로 2003. 1. 22. 경기도 고시 제2003-0호 용인·남이·백원 도시계획(재정비) 고시, 2006. 4. 24. 경기도 고시 제2006-0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8. 4. 7. 경기도 고시 제2008-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관련 지형도면 고시, 2011. 6. 20. 경기도 고시 제2011-00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가 실효되지 않은 도로구역이다.

2)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 고시를 시행하지 않은 국지도 00호선의 경기도 용인시 ○○동 ~ ○○면 ○○리 구간 도로구역 결정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

3)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계획

사업시행자는 2021. 7. 16. 경기도 고시 제0000-0000호에 고시된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지도 00호선 중 금회 사업구간은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용인시에 위 승인 고시의 의제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득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2017. 12. 19.), 주민의견청취(2019. 4. 29.~5. 20.), 합동설명회(2019. 5.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2020. 6. 26.),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1. 5. 18.)를 거쳐 2021. 7. 16. 경기도 고시 제2021-0000호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용인시 ○○구 ○○동 산 ○○-○번지 일원
- 면 적 : 952,645㎡ / 구역 외 기반시설 353,601㎡
- 사업기간 : 2019. 4. 25. ~ 2024. 12. 31. / 2024. 12. 31. 준공 예정
- 사업시행자 : (주)○○○○

나. 이 사건 고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구역 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국지도 00호선에 포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으로 고시되었다.

다. 피신청인 경기도(0000과)는 구역 외 기반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국가지방지원도 00호선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 용인시로부터 '조건부동의' 의제 협의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 매수를 진행중에 있다.

판 단

가. 관련 법령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9., 2020. 4. 7.>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1. (생략)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 31. (생략)

② ~ ③ (생략)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 2012. 4. 10., 2016. 6. 28.>

1. ~ 6.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 13. (생략)

② ~ ③ (생략)

3)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나. 판단 내용

1) 사업기간 만료로 실효된 국지도 00호선 도로구역을 포함한 이 사건 고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국지도 00호선 세목고시’를 부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국지도 00호선 도로구역은 2011. 6. 20. 경기도 고시 제 2011-000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되어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2. 31.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996. 7. 19.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으로 최초 지정되어 현재까지 폐지를 고시하지 않은 도로구역이다.

「도로법」 제25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사업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도로관리청에서 별도의 도로구역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국지도 00호선에 포함된 도로구역은 유효한 도로구역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고시의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으로 포함된 국지도 00호선의 세목고시가 실효된 도로구역을 대상으로 고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2017. 12. 19.), 주민의견청취(2019. 4. 29.~5. 20.), 합동설명회(2019. 5.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2020. 6. 26.)와 제30조제1항 각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고시 되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국지도 00호선 등에 대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용인시로부터 의제협의를 받은 바,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 및 토지보상절차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사업개요]



※ 실수요검증 이후 행정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준용

3)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고시에 포함된 수용(또는 사용)될 타인의 토지 등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를 원칙으로 취득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물류시설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지역 주민과 수용(또는 사용) 대상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 및 정신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절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사업지역 주민과 수용(또는 사용) 대상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 및 정신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수용)

- 사업시행자는 민원인 소유 토지[용인시 ○○동 ○○○-○○번지(편입토지:313㎡), ○○○-○ 번지(잔여지:49㎡)] 및 건축물 일체에 대해 소유주와 2022년 9월 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토지(잔여지 포함:362㎡) 및 물건, 별도 보상에 대하여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완료하였음.
- 신청인의 옴부즈만 고충민원은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협의로 해소되었음.

경기융합타운 공사 소음

피신청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경기융합타운 공사장 인근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계속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을 옴부즈만으로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경기융합타운과 신청인 사이에는 경기도(경기도시공사 대행)가 발주한 경기도서관 등 대형 공사현장 3개 사가 위치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주요 소음원인으로 제기된 굴착공사가 지난 2022.1월 완료된 점과 이격거리, 공정률, 타사 대형공사 현장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을 민원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음·진동 발생공사 진행 시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공사로 인한 생활소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소음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다. 관계기관(경기도지사)

경기융합타운 내 소음민원 검토결과 민원발생 시점의 공사현황 등을 고려 시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기융합타운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발주(입주) 기관에 동 민원내용 및 관련법규 등을 전달하여 공사소음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융합타운은 2004.6. 지정·고시된 광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원시 OO구 OO의동 000번지 일원 115,287㎡를 공공업무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복합개발사업으로, 2015년 신청사 건립재원 다각화 등을 고려한 복합청사 개발계획에 따라 주민의견수렴(2015.6.~11.),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수립(2016.4.), 입주기관간 경기융합타운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2016.6.),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승인(2016.12), 건축허가(2017.2), 경기융합타운 건축협정(2017.3.) 체결을 거쳐 2024.12월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이다.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여야 하고, 공사장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융합타운내 공사진행 및 소음관리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규제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경기융합타운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000 일원
- 부지면적 : 115,287㎡
- 주요사업 : 공공기관 등 공공업무단지 복합개발
- 사업기간 : 2016. 1. ~ 2024. 12. (입주기관 순차적 준공 예정)
- 입주 예정기간 : 7개 기관

※ 道(도서관 포함), 도의회, 한국은행,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의119안전센터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 ⑤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⑥ (생략)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4. (생략)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성기	옥외설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생	락	
나. 그 밖의 지역			생	락	

〈비고〉

1. ~ 6. (생략)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생략)

3)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 공사장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하는 특정공사의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특별점검 등) 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한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군에 요청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기관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내 입주기관의 공사현장은 주말공사를 최소화하고 소음의 발생정도를 규제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는 2021.7.12.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발주공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관리가 필요한 일부 공사장(1,000㎡ 이상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정기적 이행실적 관리 등 쾌적한 도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제공자료에 따르면 평일 주간 관리기준에 해당하는 65db의 소음은 사무실, 백화점 등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의 소음으로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도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으로 평가되는 바,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된 2017.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공사소음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관리기준 이하의 공사장 소음에도 높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경기도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 1. 6.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

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가 발주하는 특정공사의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이는 바, 관련 규정에 따른 규제기준 이하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경기융합타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주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따라서, 장기간 공사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경기융합타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간 협력적 건립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경기융합타운 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관리를 위해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및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수용)

- 소음·진동 발생공사 진행 시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소음·진동 최소화하고 고정식·이동식 소음측정기 설치 및 관리, 주말공사 진행 시 소음·진동 발생 공사 지양 하겠음.
-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간의 협의체 등을 통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22.12.21. 제26차 입주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사시간 준수, 저소음공법·장비 사용 등 공사소음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및 협조를 요청함.
-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사전 공지 및 표지판 설치하여 공사규모 및 일정, 소음 발생 작업 시간, 소음저감 조치현황, 연락처 등을 공지함.

국유지 개인 불법점유 목인에 대한 조사 요청

피신청인

가평군수

신청원인

이 사건 국유지와 인접한 가평군 〇〇읍 〇〇리 산〇〇번지를 매입하여 임업을 준비중에 있었으나 인접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중인 주민이 이 사건 국유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평군에서 인접 주민들만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주식회사 〇〇〇〇〇 대표로 2021. 7. 14. 가평군 〇〇읍 〇〇리 산〇〇〇번지 21,322 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임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인접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주민(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주”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국유지 가평군 〇〇읍 〇〇리 산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통행할 수 없도록 불법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걸어서조차 신청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이는 가평군에서 인접 주민들만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주와 가평군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이 사건 국유지에 설치된 불법 철조망을 철거하여 신청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걸어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옴부즈만으로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 1) 신청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유지(이 사건 국유지 외 2필지)는 현재 물이 흐르고 있고, 이 사건 국유지 일부 구간이 이미 허가된 점용허가 구간과 중첩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결합⁴ 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 우선 허가·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의 점용허가 요청지역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이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공유수면으로 후순위자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기존의 수허가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 2) 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허가자가 허가목적 범위(인공구조물, 면적)를 초과하여 철제교량, 웬스설치 등 불법 점용·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확인을 위한 경계측량 실시 후 불법 점용·사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수허가자가 존치요청한 방역울타리를 제외한 불법 점용·사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확인하였다. 존치를 요청한 방역울타리의 경우 허가 목적외 설치되었으나,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변경허가를 통해 추인허가하고, 불법 점용·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3) 또한, 주변 환경 조건을 고려할 때 별도 우회경로를 조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출입로는 인근 주민들이 축산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유지 도로(비법정)로 사인 간의 분쟁, 가축 방역을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⁴ 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구거)로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가평군이고, 경기도는 「국유재산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과 사용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인근토지 소유주는 목장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 일부 구간을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2005년부터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국유지 일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변경)사항을 2018. 1. 17. 00을 제○○○○-○호로 고시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이 사건 국유지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국유지 일부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조사결과 허가 목적의 범위를 초과(인공구조물, 면적)하여 철제교량, 웬스 등을 불법 점용·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불법 점용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2. 11. 23. 경 계측량을 실시하고 수허가자가 불법 설치한 철제교량, 웬스 등을 철거·원상복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사용된 공유수면에 대한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시설물 중 수허가자의 존치 요청이 있는 방역울타리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거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변경허가를 통해 추인 허가할 계획이다.

라. 민원사실조사를 위해 옴부즈만사무국 현장방문 시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인근 토지를 통과해야하고,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위해 이 사건 국유지의 수허가자 등 축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함과 옴부즈만 고충민원 제기와 별도로 신청인이 이 사건 국유지 일부에 대한 수허가자를 피고로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

과 통행방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손해배상(기타 통행방해) 조정을 신청하여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 2022.11.14. ○○○지방법원 ○○○지원 조정기일 통지(20○○머○○○ 통행방해)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⑤ (생략)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

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구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제11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4.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 5의2. (생략)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0., 2011. 4. 12., 2012. 12. 18., 2020. 6. 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 10. 14., 2011. 4. 1., 2013. 1. 16., 2013. 3. 23., 2021. 1. 5.,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생략)

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생략)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 아. (생략)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 처. (생략)

5)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

- 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지 역 정책과	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자목)
	2~8 9	(생략) • 사용허가 및 승인	

나. 판단 내용

- 1) 신청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걸어서라도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민원은 조사결과 법원에 사건명 ‘통행 방해’로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를 통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을 요청한 사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2) 다만, 이 사건 국유지 수허가자의 국유지 불법 점유 묵인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국유지의 일부를 점용·사용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수허가자는 목장 운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이 사건 국유지 일부를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 3) 그러나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른 확인 결과 이 사건 국유지는 수허가자가 당초 허가 받

은 목적을 초과하여 철제교량, 헨스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공유수면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존치를 요청한 시설물(방역울타리)을 제외하고 원상복구 명령 및 조치완료 하였으며, 확인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시기와 사용한 초과면적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의 경우 공유수면에 대한 연장허가한 2018년 이전부터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에게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수허가자에게 점용·사용허가한 공유수면이 목적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수용)

-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공유수면이 점용·사용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책임을 다하겠음

식품 이물 혼입에 대한 조치 요청

피신청인

양평군수

신청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주문하여 마시던 음료에 혼입된 곤충으로 인해 치료 중이던 치아가 악화되어 이 사건 업소의 위생 및 식품 유통기한 관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량한 식품에 대한 조사, 신속한 피해자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22. 8. 21. ○○법인 ○○○ 카페(양평군 ○○면 ○○로 ○○, ○○층 소재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주문하여 마시던 음료에서 나방이 나왔고, 이로 인해 치료 중이던 치아가 악화되었다며 이 사건 업소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2,000만원)하는 통고서를 두 차례 송부하고, 이 사건 업소의 위생 및 식품 유통기한 관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2022. 9. 14. 양평군 ○○○과(경기도 접수, 관할 시·군 이송 /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로 제기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으로부터 2022. 9. 20. 이 사건 업소에 불시방문하여 식품접객업체 지도·점검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영업장 내부의 방충을 위한 포충기 설치, 방역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관리 등 특이사항이 없어 향후 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관리자에게 엄중히 행정지도하였다는 회신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량한 식품에 대한 조사, 신속한 피해자 조치, 전후 경과에 따른 조사 및 추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피신청인과 이 사건 업소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불법성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민원제출에 따라 이 사건 업소를 불시방문하여 음료 조리단계 중 이물 혼입 사실 관계 및 영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당시 음료 조리 시 사용한 원재료는 제조 과정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소분하여 밀봉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정해진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소 내부의 방충을 위한 출입문 폐쇄 운영, 입구 쪽 포충기 설치, 방역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관리 등 음료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곤충류 이물이 혼입될만한 특별한 개연성 및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장 내 전반적인 위생점검 및 개인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에 따라 2022. 9. 21. 신청인에게 점검결과 이상없음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지도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다. 관계기관(경기도지사)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에 따라 시·군·구는 지도·점검 책임기관으로 시·도는 추진 상황점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전⁵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 검체는 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포장되어 그 유형이 같은 식품 등으로 검사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제조음료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취, 운반되지 않은 검체로 경기도○○○○○○○○에서 검사하기 어렵다.

⁵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제조 및 규격 등을 정해놓은 기준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아울러,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을 신고 받은 경우 절차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기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22. 8. 21. 이 사건 업소에서 아이스연잎라떼 등 제조음료 3잔을 구입·환불 받은 사실과 이물(나방)이 혼입된 음료를 마시고 난 후 턱 부위가 붓고, 침샘 쪽에 통증을 느껴 치과치료를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통고서를 두 차례(2022. 8. 23., 2022. 9. 15.)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아울러, 신청인은 2022. 9. 14. 우편을 통해 경기도(북부청 민원실)로 이 사건 업소의 위생 및 식품 유통기한 관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경기도는 해당 업소 점검 및 민원회신을 위해 이 사건 업소의 소재지 조사기관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에게 이송하였다.

민원을 이송받은 피신청인은 민원조사를 위해 2022. 9. 20. 15시경 이 사건 업소를 불시방문하여 2022년 식품안전관리 지침 식품접객업체(휴게음식점) 지도·점검표에 따라 원재료 관리·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상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위반사실 미적발로 위생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자에게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해당 음료 조리 시 사용하는 원재료(연잎분말)의 유통기한 및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과 업소 내부 방충을 위해 출입문 폐쇄, 포충기 설치, 방역업체를 통한 정기관리하고 있는 점 등 음료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곤충류 이물이 혼입될만한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결과 보고 후 민원회신 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플라스틱컵 안에 나방으로 보이는 이물과 제조음료 원재료로 보이는 녹색 분말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현물(이물)을 별도로 수거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으며, 음료에 이물이 혼입된 과정 및 시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적 피해의 의학적 상관관계 또한 객관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

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2020. 12. 29.>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 19. (생략)

② ~ ⑤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 7. (생략)

③~⑤ 생략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바. (생략)

9. (생략)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 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2. ~ 8. (생략)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생략)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숫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 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1. 6. 30.>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제10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100	200	300

4)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 (생략)
-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 기생충 및 그 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 (생략)

제6조(이물 원인조사 실시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 외의 이물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② ~ ④ (생략)

5) 소비자 보호법

-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6)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생략)

7)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1]

대상품목

번호	업종	품종	해당 품목
27	식료품	다류	커피, 홍차, 울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칩차, 생강차, 계피차 등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27. 식료품(19개 업종 / 청량음료, 다류 등)

분쟁유형	해결 기준	비고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나. 판단 내용

- 1) 이 사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물 혼입에 대한 보고대상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제46조제3항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과 증거제품 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사기관은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과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물 혼입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아이스연잎라떼에 나방이 나와서 본인이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유효기간 관리나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 민원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물이 혼입된 증거제품을 인계받거나 검체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식품접객업체(휴게음식점) 지도·점검표의 점검항목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에서 정한 점검·조사 내용이 다수 중복되어 피신청인의 원인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한 음료에서 이물을 발견한지 25일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 민원을 제기한 점,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의 경우 이물 보고를 제외하고 있는 점, 해당 증거제품이 이물조사를 위해 정해진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제품을 수거·조사하였더라도 이물이 혼입된 과정 및 시점(제조단계 또는 소비단계 등)을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음식물의 이물혼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곤충 이물혼입 예방방법으로 방충망·포충등·배수구 덮개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가 포충기 설치, 방역업체 정기관리 등을 실시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곤충 이물 혼입 예방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는 같은 법 제3조,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식품 등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음료에 이물이 혼입될 만한 특별한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한 점, 이물 혼입과정 및 시점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없이 관리자를 대상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객관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검대상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라 판단하기 어렵다.

-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식품안전법」 등 관련 규정은 이물 혼입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 조사기관의 역할을 이물 혼입에 대한 원인조사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물 혼입에 따른 피해보상은 신청인과 이 사건 업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쟁송,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피신청인이 관여할 수 없다.

- 5) 다만, 영업자에게 이물 혼입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대상 이물 혼입의 경우 소비자와 영업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신고되는 민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원인조사 절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의 사례처럼 작은 벌레 등의 이물 혼입의 경우 이물이 혼입된 증거제품 회수를 필수로 하는 원인조사 절차보다는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중점하고 있어 2차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관계기관 경기도는 이물 혼입 신고에 대한 원인조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을 포함한 시장·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을 포함한 시·군에 식품 이물 혼입신고 접수시 원인조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결과 (수용)

- 2023.1.5. 시·군에 '식품접객업소 이물원인조사 절차 준수 및 이물혼입 예방홍보 등 요청' 공문 시행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이물 혼입 신고(국민신문고 등) 처리 시 '2021 식품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른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식품접객업소 조사표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이물 조사 추진
-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이물 혼입 예방 지도 및 교육·홍보 적극 추진

축사로 인한 악취 등 피해 조치 요청

피신청인

양평군수

신청원인

신청인 주거지 인접 한우 축사의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변 악취, 먼지, 오폐수, 해충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단속기준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한우 축사(양평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와 인접한 주택(양평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2018년 6월 신청인의 입주시기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2마리에 불과하던 축사의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2마리 → 12마리)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변 악취, 먼지, 오폐수, 해충 등의 피해가 참고 견디기 힘들어졌으며, 특히 여름부터 가을까지 대형환풍기 가동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을 피신청인(양평군)에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단속기준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축사 소유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악취제거 및 오염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① 분변 먼지와 냄새, 해충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 ② 대형환풍기 방향 조정, ③ 축사 발생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요구하는 민원과 주택가에 설치된 축사의 사육 규모, 오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등 제반규정에 대한 질의를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축종별 적정사육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방사형 시설에서 한우(번식우)를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기준은 1두당 10㎡로 축사면적 264㎡인 이 사건 축사는 최대 26두까지 사육이 가능한 시설이며, 현재 적정 사육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악취 및 분변먼지 저감을 위해 축사소유주 자부담으로 원치커튼 및 차광막을 이미 설치하고 있으며, 의무화되지 않은 차단벽 추가설치와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환풍기 또한 근거규정이 없어 방향조절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축사소유주가 악취, 파리, 모기, 해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및 탈취제, 안개 분무기 등 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 희망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사양 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1조(보고·검사)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 등 위반 여부,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축사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고 있는 배출시설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다. 관계기관(경기도지사)

축사환경 컨설턴트와 동행하여 이 사건 축사를 점검한 결과 한우 사육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해당하며, 축사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축사 먼지 차단을 위해 원치커튼(차단천막), 차광막(처마와 원치커튼 사이) 등을 설치하는 등 인근 주택의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운영자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점

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른 정화시설 설치의 무 면제대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추가적인 시설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축사 건축 이후 근접한 위치에 조성된 주택 등으로 인해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피신청인(○○○○○○)이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제의 지속적인 공급, 축사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축사 소재지는 주변 50m 이내에 주택 등이 위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일부 행위만 인정되는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지적공부에 따르면 이 사건 축사는 1997. 5. 9. 건축물사용승인되어 2000. 3. 29. 증축과 함께 대지권이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00. 5. 31. 이 사건 축사에서 증축·분리 등재된 1층 창고(98.75㎡, 주택으로 용도변경)와 2001. 10. 9. 증축된 주택(32.26㎡)이 2018. 6. 21.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사건 축사의 운영자는 264㎡ 축사규모를 갖추고 2016. 4. 20. 양평군수로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는 시설의 형태, 축종 등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방사형 시설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있는 이 사건 축사의 경우 1두당 10㎡를 사육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26두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활용하여 12두를 사육하고 있는 이 사건 축사의 사육규모는 적절한 범위로 확인된다.

라.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3항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축사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2020.10.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항은 처리시설 설치의무자 중 처리시설의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축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피신청인 등의 현장조사결과 악취 및 분변먼지 감소를 위해 저감시설(원치거름,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축사를 운영중에 있다.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 5. (생략)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 ~ ⑤ (생략)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

2. ~ ④ (생략)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5. 3. 24., 2022. 4. 12.>

1. (생략)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 4. (생략)

3)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21.>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③ ~ ④ (생략)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5)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제한내용			
1. 전부 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 마. 주거밀집지역			
2. 일부 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부터 아래 표의 축종별 거리 내의 구역			
	축종	소, 말, 양, 사슴	젓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거리	220미터	350미터	2,000미터

[별표 2]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한내용
1. 전부 제한구역	배출시설 신축·증축·개축
2. 일부 제한구역	배출시설 신축 (다만,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존 배출시설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에 배출시설을 신축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배출시설을 이축(移築)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전부 제한구역부터 배출시설까지 거리는 전부 제한구역부터 기존 배출시설까지 거리보다 멀어지도록 한다)

나. 판단 내용

- 1) 피신청인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축사 소재지는 이 사건 축사가 신축(1997.5.9.)된 이후 개정·시행(2020.9.23.)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시설 신축이 제한되는 일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생계 위협 및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축산법」 등 관련 규정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축사육업을 허가하고 있는바, 축산업자가 허가받은 적정사육 규모내에서 사육개체를 증감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

- 2) 이 사건 축사는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방지와 축사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주택으로 향하고 있는 대형 환풍기 6대를 설치·가동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으로 향하고 있는 환풍기의 방향조절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축사 인근에 다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풍기 방향조정 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환풍기 재가동 시기(내년 6월)가 도래하기 전 환풍기 풍향이 조정(이 사건 주택 → 축사 상부) 될 수 있도록 환풍기 재설치 등 피신청인의 적절한 축사환경개선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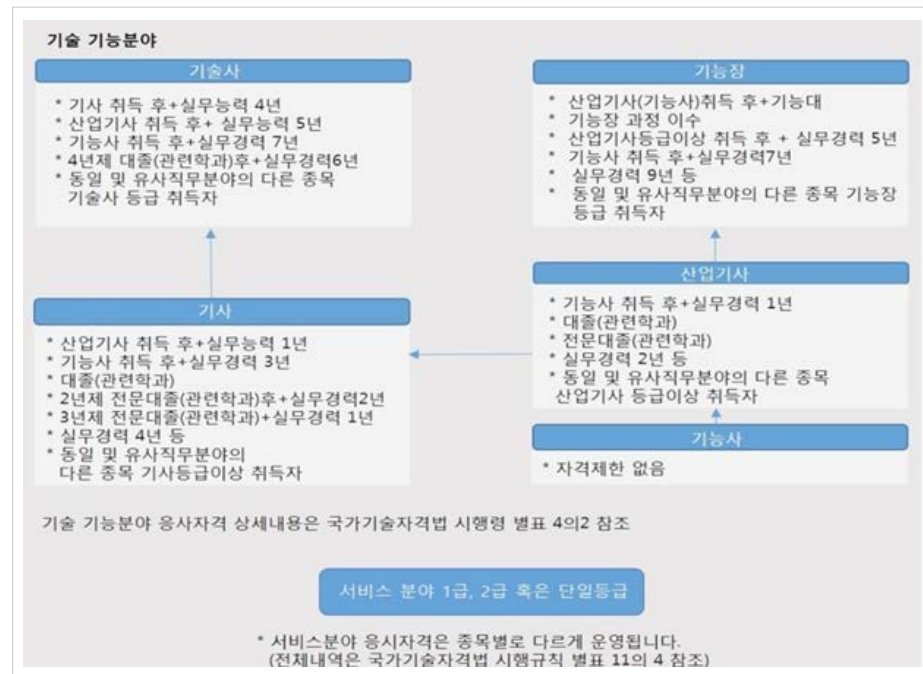
- 3) 이 사건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발생 축분을 전량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대상으로 오폐수 정화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아울러,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현장점검결과 비교적 사육관리가 양호하고 의무화되지 않은 원치커튼 등 악취 및 분변먼지 저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바,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 추가적인 시설개선 요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다만,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축사는 관련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규모 축사로 의무화되지 않은 추가적인 환경개선이 어려운 점, 현장점검 시 전문가로부터 소규모 농가로 사육관리가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축사 위치를 고려하여 환경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사바닥의 정기적인 깔짚교체, 환경개선제(미생물제) 공급 등을 먼지·악취 저감방안으로 제안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환경민원(악취, 먼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피신청인이

나. 종류 :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된다.

1) 국가기술자격

- 자격등급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 운영체계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법령 및 제도 운영 총괄
 - 주무부처(자격증 중목관리) : 관련 사업법령에 의거 자격취득자 활용 및 사후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검정시험)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집행,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 * 공단 외 7개 수탁기관에서 검정 시행
- 검정기준(기술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중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응시자격 조건체계



※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2) 국가전문자격

- 개념 :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 성격
 - 해당 분야의 학력이나 경력이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직업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많다.
- 종류(예시)
 - 산업안전지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물류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조무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비교

구분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자격종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 / 시행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도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안전사고와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재해방지기술을 습득하여 건설사고에 대한 규제 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 제도 시행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 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수행직무	건설안전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응시자격	자격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별 응시자격 제한 유·무	없음
시험과목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1차: 공통필수1(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2(산업안전일반), 공통필수3(기업진단, 지도) 2차: 전공필수 택1(건설안전공학) 3차: 면접시험
관련학과	대학,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및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관계법령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2019. 4. 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구분	자격기준
3급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비고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실관계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가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같은 법에 따라 규정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에 따른 환경·에너지·안전분야 산업안전관리 교사의 자격직종 요구자격 중 건설안전기술사는 국가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고,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건설안전기술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2급에 응시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3급에 응시할 수 있다.

판 단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에 있어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와 국가전문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는 응시 가능 급수가 각 2급, 3급으로 차등이 있는데, 이는 자격 시험과목도 다르며 건설안전기술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와 달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응시자격 제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응시자격 기준에 제한을 두는 것이 평등권 측면 등에 볼 때 위법은 없어 보인다.

나.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는 그 자격증 취득 조건이 다르고 개인별 보유 능력이나 경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두 자격증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직무능력 보유 수준에서 크게 변별력이 없어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교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을 건의하려는 의견은 비교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자격증 취득자 사이의 직무능력 보유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그렇다면 그 전제 사실이 맞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 법령개선을 건의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탈락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소재 비영리 사단법인 ○○○○ ○○아카데미(이하 해당법인)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며, 해당법인은 2021년,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노인교육사업 유형) 하였으나, 2년 연속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 신청인은 2021년 지원사업에 탈락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1.4.26. 해당법인이 탈락된 사유를 알고 싶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5.3. 피신청기관(○○○○과)으로부터 ○○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회신받은 바 있다.
- 2) 해당법인은 같은 해(2021년) ○○시 노인복지사업으로 22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교육강사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경기도가 중복지원을 사유로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3) 또한, 당시 피신청기관(○○○○과)의 담당주무관이 해당 법인의 탈락에 대하여 유감을 표

시하고 내년을 기약한 사실이 있으며, 담당주무관의 의사를 대외적인 기약으로 믿고 그 사과를 받아들였으나 2022년 공모사업에서도 또다시 탈락하였다며 선정 탈락을 취소하고 구제를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 1) 2021년 해당법인으로부터 지원사업 탈락사유를 알고 싶다는 민원이 제출되어 피신청기관은 정해진 민원회신 절차에 따라 부서관리자 결재 후 문서로 민원답변 사항을 회신하였다. 담당주무관은 민원안내를 위하여 해당법인으로 연락하여 예정되어 있는 2022년 지원사업 공모계획과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20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확약한 것이 아니었으며 민원안내 결과는 별도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다.
- 2) 또한, 해당법인은 2022년 지원사업 공고문에 기 공고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
- 사업목적 : 창의적 노인복지사업 개발을 통한 어르신 복지증진 기여
- 지원대상 :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관련 기관·단체
- 사업비 / 사업량 : 2억원 / 20개 기관·단체(1천만원 한도 / 10% 이상 자부담)
- 심사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 ○○○○과는 도내 기관·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공모·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노인관련 기관·단체를 신청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고 타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 경기도 공고 제2022-○○○호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등

나. 해당법인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1년 모바일 정보화 교육,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2년 연속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2021년 공모사업 탈락 후 탈락 사유를 알고자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경기도 옴부즈만은 ○○○○과로 이송하여 탈락사유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다. 당시 경기도 ○○○○과에서는 ○○시 노인복지기금사업과 중복사항*이 있음을 사유로 해당법인이 탈락하였음을 회신하였고, 담당주무관은 내년 사업에 다시 참여할 것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 사단법인 ○○○○○아카데미(대표 ○○○) / 정보소외계층 고령층 정보화교육 / 2,200천원

(2021.3.23. ○○시 ○○○○과-8621 2021년 사회복지기금 공모 신청에 따른 중복지원여부 확인결과 제출)

라. 신청인은 이를 담당주무관이 중복을 사유로 탈락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년도 지원을 기약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에 탈락한 사실이 부당함을 이유로 경기도 옴부즈만에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다.

판 단

가. 관련법령

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4.6., 2021.10.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7.10.4.〉
2. 노인복지지원사업 [신설 2016.12.16.]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개정 2016.12.16.〉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업내용) 제3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단체 지원·육성
2.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
3. 노인교육사업
4.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5.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 [전문개정 2017.7.17.]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전문개정 2017.7.17.]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
4. 그 밖의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설 2017.7.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분과심의위원회 또는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7.17.〉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사업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제3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2021년, 2022년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고문 또한 타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기관(○○○○과)는 신청인의 탈락사유 질의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공모사업에서 탈락하였음을 회신하였다.

- 2) 아울러 신청인은 해당법인의 신청사업이 ○○시의 보조금만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타기관의 중복지원으로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3)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절차에 따라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한 결과 해당 법인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경기도 기관추천 장애인특별공급 배점항목 시정 요청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신청 원인

신청인의 어머니는 고령의 장애인 단독세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 대상에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과정에서 현재의 '경기도 주택알선 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 중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에 대한 평점요소가 신청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 신청인은 경기도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이하 '배점기준표'라 함)」의 평점요소 중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에 대한 평점요소(이하 '해당 평점요소'라 함)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우대하는 취지의 평점요소임에도 이에 반하여 신청자를 미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평점요소에서 신청자 미포함 부분을 65세 이상 신청자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道 ○○○○○과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2) 해당 평점요소는 2006년 보건복지부의 배점기준표 개정(2006.7.13.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2237 / 2006.9.1.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평점요소의 취지에 반한 개정으로 이전까지는 이 취지에 맞게끔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3) 또한, 해당 평점요소를 65세 이상의 장애인 신청자는 점수를 받을 수 없고 65세 이상 세대원만 점수를 받는 장애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장애인을 우대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경우 세대원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및 해당 평점요소에서도 점수를 받게 되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단독세대와 비교하여 3번이나 점수를 받게 되어 상대적 불이익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4)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는 공급신청자의 장애정도, 무주택 세대구성원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으로 구성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배점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에게만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세대에 주어지는 특별공급제도임에도 평점요소별 신청자 포함 여부에 따라 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

* 세대구성원 중 장애인 2명(65세 이상 1명, 65세 미만 1명)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배점 5점 차이 발생

나. 피신청인

1)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고령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없는 점 등 큰 틀에서 장애 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틀에서 볼 때 장애인 특별공급 또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우선 지원제도가 아니며, 다만 장애인 노부모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점수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시·도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2006년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전·후에 따른 역차별 주장은 신청인의 연령에 따른 유불리가 해소된 것이며 세대원(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점을 주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해당 평점요소를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어 그 반대의 세대들 젊은 청장년층 장애인에게 불리해지는 장애인 세대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해당 특별공급에서 중복적 배점은 물량 한정으로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대상의 특성에 따른 중복적 배점기준이 있다. (다자녀가구 예: 미성년자녀의 수, 영유아자녀의 수)

4)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한된 공급 물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주택알선 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는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신청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상대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유·불리에 따른 기준변경은 어렵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검토의견서,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특별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기관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있다.

나. 1995.2.1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997.10.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당초)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그 사업주체가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제15조제1항제10호)
- (변경) 장애인으로서의 당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 자(제19조제1항제9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지침)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를 포함하여 특별공급알선대상, 절차,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등에 대한 사업안내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인 2019년까지 배포하였다.

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기관추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주택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주택알선 순위 배점신청 및 확인서 평점요소(2022.5.1. 시행 기준)]

평점요소	배점	비고
신청인 장애정도	2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30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부가 무주택인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신청자 미포함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신청자 미포함
세대원구성	20	신청자 포함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특별공급 해당 건설 시군에서 연속해서 거주한 기간

라. 신청인이 65세 이상 장애인 공급신청자에 대한 불이익과 역차별을 주장하며 개정 요청하고 있는 해당 평점요소는 보건복지부의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변경(2006.9.1.시행)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전국 시·도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평점요소	배점	비고	평점요소	배점	비고
6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세대주 포함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세대주 미포함

판 단

가. 관련법령

1)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16. (생략)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7. (생략)

8. 제35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의2.~9.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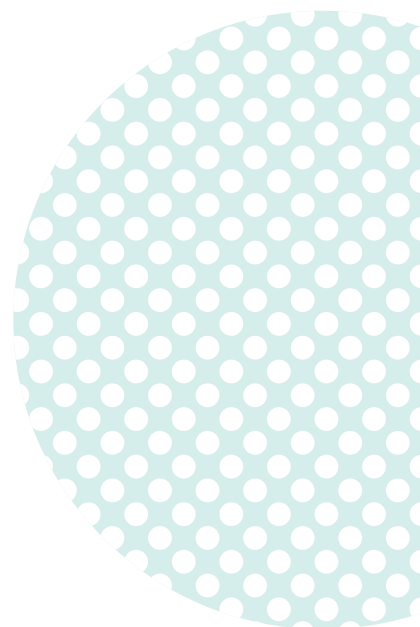
3)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18조(장애인의 주거안정 등) 도지사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결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Ombuds
Man



Ombuds
Man

05

부록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도에 설치한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국가옴부즈만”이란 국민권익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말한다.
7. “관계행정기관등”이란 제1호의 고충민원 발생기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5. 관할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도지사 및 도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를 한 경우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 ② 옴부즈만은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③ 옴부즈만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14.>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14.>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14.>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 ⑤ 옴부즈만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5.1.14.>
 -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1. 도 본청 및 소속기관
-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 3.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4.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2. 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충민원 업무 담당 국장
 2. 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도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⑦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수탁 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협력 하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옴부즈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③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범위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개정 2015.1.14.>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2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단체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단체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에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은 상호 독

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가옴부즈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옴부즈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근무자의 인사·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제2조(옴부즈만 회의소집) ①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옴부즈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옴부즈만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 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 : 옴부즈만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 관계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제11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9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13조(신청 및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옴부즈만이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관할기관의 관련부서에 송

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기간 연장) 옴부즈만이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하 “옴부즈만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옴부즈만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 ④ 대표옴부즈만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옴부즈만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중지 등) ① 옴부즈만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1.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조사의 중지 등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합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옴부즈만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 회의에 부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수당과 여비)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전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분증명서) ① 경기도지사는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는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5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6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사무국장)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상당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활동 지원부서의 장 또는 옴부즈만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경우에 지방행정4급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8.]

제5장 보 칙

제28조(옴부즈만 사무의 전결)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9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0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르며,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제31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28조 관련)

사무명	사무전결	
	사무국장	대표옴부즈만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
다. 신청의 보완·취하	○	
라. 관계 부서 이첩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옴부즈만 결정		○
나. 조사의 중지·중단		○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	
마. 옴부즈만 상정 전 합의	○	
바. 옴부즈만 상정 전 조정		○
사. 조사결과 보고		○
아. 신분증명서 발급	○	
3. 옴부즈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
나. 의안 작성·배부	○	
다. 의결서 작성	○	
라. 의결서 경정		○
마. 회의록 작성	○	
바. 결정의 통지	○	
사. 재심 여부의 결정		○
아.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
다. 감사의 의뢰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
나. 파견직원 관리	○	
다. 관인 및 기록물 관리	○	
라.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illegible]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옴부즈만 의결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대표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옴부즈만 의결서

제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대표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 신 · 구조문대비표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

경기도 옴부즈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옴부즈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직원	팀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우 1644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나. 신청인 통지용

경기도 옴부즈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우리 옴부즈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붙임 의결서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를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옴부즈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옴부즈만의 권고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직원	팀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우 1644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담당직원	팀장	사무국장	조사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민원 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인)			
조치 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	기 관 명	
	주 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하실 사항

-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수번호	접수					처리				비고
	접수일	신청인 (대리인)	주소 (연락처)	민원명	피신청인	조사자	처리일 (의결일)	처리내용	처리 결과 통보일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 단체명칭)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경기도 옴부즈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1-8008-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귀하

비 교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귀하

비 교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	--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옴부즈만

수신

제목 고충민원 조사통보서

1.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조사기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옴부즈만 사무국 담당직원 (☎ 031-8008-××××)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직원	팀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우	1644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 www.0000.go.kr
전화	() 전송 ()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옴부즈만

수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옴부즈만 사무국 직원에게(☎ 031-8008-××××)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기도 대표옴부즈만

직원	팀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우	1644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 www.0000.go.kr
전화	() 전송 ()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신분증명서

(앞면)

제 호	신분증명서	3cm × 4cm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옴부즈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직인

(뒷면)

◎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

(앞면)

제 호	신분증명서	3cm × 4cm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에 근무하는 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직인

(뒷면)

◎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담당직원	팀장	사무국장	조사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주 소		
피신청인		접수일	20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옴부즈만의 의견
5. 제도개선 필요여부
 -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조사옴부즈만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

2022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발 행 일 2023. 1.

발 행 처 경기도 옴부즈만

기 획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 화 031-8008-4910~4911, 2908

홈페이지 www.gg.go.kr/ombudsman

